

본 약관 번역문은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Fire Insurance Policy (F. O. C)

이 보험증권은 (이하 피보험자라고 함)가 후기의 제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별기한 물건에 다음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하기 위하여 일금 정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한다.

당회사는 이 증권에 표시된 제조건과 이 증권의 배서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또는 당회사가 해당 보험료를 영수한 보험기간의 갱신기간중에 일금 정이나 사고발생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피보험자와 합의한다.

또한 이 증권의 인쇄된 조건중에 나타나는 화재란 말은 화재와 낙뢰를 의미한다.

이 증권에 관계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제1조(부실기재) 보험의 목적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이나 장소에 관하여 중요한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그러한 부실기재, 불고지 태는 부실고지에 관계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당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조(영수증) 당회사의 직원 또는 정당하게 선임된 당회사의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인쇄된 영수증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당회사에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타보험회사와의 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허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다른 보험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장차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보험사항이 당회사 또는 당회사의 대리인에 통지되어 이 증권상에 기재되거나 배서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이 증권상의 모든 이익을 상실한다.

제4조(도괴조항)

-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건물내에 수용된 물건

③ 건물 또는 건물내에 수용된 물건과 관련된 임차료나 기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증권하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a) 전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b) 연속건물 또는 그 일부나 이들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구축물의 도괴 또는 전복이 다음의 각호의 에 해당된 때에는 이 보험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건물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

2. 건물의 전부 태는 일부의 유용도의 감소

3. 건물의 전부 태는 일부나 그 건물내에 수용된 건물에 대한 화재위험의 증가나 증대한 결과의 초래

4. 이 증권에 의하여 부담되고 있는 화재나 기타 손실 또는 손해에 기인하지 않거나, 건물, 연속건물 태는 구축물이 이 보험에 가입되었더라면, 이 증권에 의하여 부담되었을 화재나 기타의 손실 또는 손해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도괴 또는 전복이 전술한 화재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피보험자에 있다.

제5조(부담하지 않는 위험-①) 이 보험은 다음의 손실 태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a) 화재중 또는 화재후의 도난에 의한 손해

(b) 보험의 목적의 자연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제7조(f)에 규정된 것은 제외)나 가열 또는 건조작용을 받음으로써 생긴 손실 또는 손해

(c) - ①관의 명령에 의한 소각으로 생긴 손실 또는 손해

(d) - ②지하화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

제6조(부담하지 않는 위험-②) 이 보험은 직접, 간접 또는 근인, 원인을 불문하고 다음 사항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a) 지진, 분화, 태풍, 폭풍, 선풍이나 기타의 자연변상 또는 대기의 변상

(b)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나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 폭동(Mutiny, Riot), 소요, 반란(Insurrection, Rebellion) 혁명, 음모,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포위상태의 선포 또는 그 유지를 결정하는 사태 또는 요인.

직접, 간접 또는 근인, 원인을 불문하고 전기한 사건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상태(실체적인 여부를 불문)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가 전기한 이

상상태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발생하였음을 피보험자가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회사가 소송절차에 있어서 이 규정을 들어 어떤 손실이나 손해를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실 태는 손해가 보상되어야 한다고 입증하는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제7조(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제외되는 물건) 다음의 물건은 증권상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 보험에서 부담되지 아니된다.

- (a) 신탁 또는 위탁에 의하여 점유되는 물건
- (b) 금은괴 또는 박혀있지 않는 보석
- (c) 가격이 100불(또는 £20)을 초과하는 골동품 또는 미술품
- (d) 고본, 도면, 회화 또는 도안, 본 모형이나 주형
- (e) 증권, 채무증서 또는 각종 증서류, 인지류, 주화, 지폐, 수표, 회계장부나 기타의 영업장부
- (f) 석탄, 그러나 그 자체의 자연발화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한함
- (g) 폭발물
- (h) 폭발에 기인하여 또는 그 결과로써 생긴 손실 또는 손해, 그러나 내부에서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건물 또는 가스제조소의 일부가 아닌 건물내에서 조명 또는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의 손실로 본다.
- (i) 우발적인 여부를 막론하고 삼림, 총림, 원야, 초원이나 장글의 연소또는 지상물의 제거를 위한 화재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로써 생긴 손실 또는 손해

제8조(변경과 이전) 다음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당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증권상에 그 사실이 배서되지 아니하면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a) 종사하는 상업 또는 제조업의 변경이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화재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이 증가되도록 변경될 경우
- (b)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을 비워둔 채 3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c)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외의 건물 또는 장소에 이전된 경우
- (d)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가 유언 또는 법률상의 당연한 결과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로부터 타인에 이전된 경우

제9조(해상보험조항) 이 보험은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 해상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해상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상되었을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계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지급될 손실 또는 손해액이 해상보험증권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회사는 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계속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관습상의 단기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취득한다.

당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지일 이후의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비례적 부분을 반환한다.

제11조(화재의 발생)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후 15일 이내 또는 당회사가 서면으로서 특히 승인한 유예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당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손해청구서

이 청구서에서 사고발생 당시의 시가를 고려하되 어떠한 이익도 포함시키지 않고 산출한 보험의 목적의 각 물건별 또는 각 항목별 손해액과 그 산출명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b)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에 그 명세

당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 청구, 화재의 원인,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상황, 당회사의 책임과 그 보상액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 도면, 견적서, 장부, 증빙서류, 송장 또는 그 부분이나 사본, 증거 또는 기타의 보고를 정당하게 요구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비용으로서 이를 작성 또는 입수하여 손해보상의 청구 또는 이에 관한 사항이 진실함을 표명하는 서약서나 기타의 적법적인 서류와 함께 당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회사는 본조 소정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이 증권에 의하여 부담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건물 또는 구내에 들어가서 이를 점유하든지 점유를 계속하는 것

(b)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시 그 건물 또는 구내에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점유하든지 인도를 요구하는 것

(c) 전기 물건을 점유하여 검사, 구분, 정리, 이동 또는 이에 준하는 처리를 하는 것

(d) 이행관계자의 계산으로 전기 물건을 매각 또는 처리하는 것 당회사는 본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의한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서 통지하든지 또는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보거나 이를 철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회사는 본조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든지 또는 행사하려고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손해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태한 손해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이 보험증권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증권에 의한 당회사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당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이 증권하의 모든 이익은 상실된다.

피보험자는 당회사가 보험의 목적을 점유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당회사에 위부할 권한이 없다.

제13조(실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증권에 의한 모든 이익을 상실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 사기가 있을 때; 손해보상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 보험증권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였을 때; 손실 또는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목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 손해보상청구가 거절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또는(이 보험약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중재인이나 심판인이 판정을 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4조(현물보상) 당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해액을 지급하는 대신으로 훼손 또는 멸실된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상복구 또는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사는 완전무결하게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으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상당하고 충분할 정도로 원상복구하면 되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당회사가 인수한 금액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당회사가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 또는 대체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서 설계도, 견적서, 척도, 수량서 및 기타 명세서를 작성하여 당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회사가 원상복구 또는 대체의 목적으로서 취하였거나 취하게 될 행위로서 곧 당회사가 원상복구 또는 대체를 선택하였다고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구획의 정리나 건축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시 또는 다른 현행규칙 때문에 보험

의 목적의 원상복구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원상복구 또는 수선할 경우에 소요되는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제15조(권리의 대위) 손해보상의 전후를 막론하고 피보험자는 당회사의 비용으로 당회사가 이 보험증권에 따라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취득 또는 대위하는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나 배상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 및 사항을 하거나 이를 위하여 당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및 사항을 하는 데 협력 또는 동의하여야 한다.

제16조(분담조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유효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하여 체결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회사는 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그 비례적 부분이상의 지급을 하든지 분담을 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안분조항) 화재가 발생한 당시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의 총 가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그 자신이 보험자로 간주되고 손해의 비례적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의 목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이 조항을 적용한다.

제18조(분쟁의 조정) 손실 또는 손해액에 관하여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그 분쟁은 일체의 다른 문제와 분리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선정하는 1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만약 양당사자가 단일중재인의 선정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써 요청한 후 2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가 각기 서면으로써 선정하는 2명의 이해 관계없는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재인의 선정을 거절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단독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중재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의는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중재인이 서면으로서 선정하는 심판인의 결정에 따른다. 심판인은 중재인과 같이 심리를 담당하고 그 회의의 장이 된다. 당사자의 사망은 중재인 또는 심판인이 권한을 말소하든지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재인이나 심판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중재인 또는 심판인을 선정할 당사자나 중재인은 그 후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 및 심판의 비용은 분쟁이 있을 경우에 먼저 중재인 또는 심판인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손해액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 먼저 중재인 또는 심판인의 판단을 받는 것은 본 보험증권상에 있어서 소권취득 또는 소송제기의 전제

조건임을 이에 명문으로 규정한다.

제19조(회사의 보상책임의 종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뒤에는 당회사는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의 청구가 분쟁의 조정중이거나 소송에 계류중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통지) 이 약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당회사에의 모든 통지와 기타의 통신은 서면으로써 행하여야 한다.

전기기계 특별약관

(이 조항은 폭풍우 보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기기구 또는 장치(전선을 포함)가 증권에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당회사는 화재가 속발하지 않는 한 인공적인 전류로 인하여 전기(전기)의 전기 또는 장치(전선을 포함)에 생긴 훼손 또는 장애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잔존물 제거 특별약관

이 보험은 이 증권에서 부담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제거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당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보험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에서 본 조항과 같은 비율 이상의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당회사는 이 증권의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증권에서 부담되고 있는 위험으로 손해를 입지 아니한 보험가입물건이 법규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잔존물의 제거비용은 이 증권상의 공동보험조건에 있어서 보험가액속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궤도차량위험 담보특별약관

1. 본 보험증권은 대한민국 지역내에서의 운행 중 다음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물질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한도로 하여 부담한다.

명 세 표

상세	제조연도	모델	가입금액
1)			
2)			
3)			
4)			
5)			

6)

7)

2. 본 보험증권은 다음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a) 화재 또는 낙뢰

(b) 폭발(단, 스팀보일러 또는 내연기관에 기인한 폭발을 제외함)

(c) 충돌, 탈선, 전복(본 조항에서의 충돌이란 연결작업 또는 분리작업과정에 있어 접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손해 면책조항

본 보험증권에서의 손실 태는 손해와 관련한 보상금은 매 건당 매회 를 공제하여 정산한다.

4. 부담보 물건

본 보험증권은 다음 물건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다.

(a) 자동차, 기차, 회차 기타 본 보험증권에 명시되지 않는 위와 유사한 운송용구

5. 담보위험

보험증권은 다음의 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a) 여하한 기구의 법정능력을 초과한 견인 또는 적재에 기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

(b) 화재가 계속 일어나 그 화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제외하고 여하한 기기를 불문하고 그에 의한 단락 또는 전기적 상해(사고) (낙뢰를 제외한다)에 기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

(c) 재해의 발생 중 또는 발생 후에 있어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태는 경감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서 생긴 부분의 손실 또는 손해

(d) 파손, 멸손, 자연소모 또는 설치 운행함에 부수하여 생기는 자연손해

(e) (1) 전시 또는 평시를 불구하고 (a) 여하한 정부, 통치기관, 육해공군사력을 갖는 기관 또는 (b) 육해공군 또는 (c) 상기의 제 기관 또는 정부의 비행권 차등에 의한 실전에 결과로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 (2) 전시 또는 평시를 불문하고 원자핵분열 또는 방사능전쟁에 기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 (3) 폭등, 혁명, 민전, 침략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비한 공방전을 위하여 정부당국이 취하는 조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 차압, 방역을 위한 파괴, 관세법규, 금제, 밀수, 밀무역 위험물에 기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

(f) 파업, 노동쟁의, 폭동, 소요 및 이러한 사건 또는 동란에 가담하는 자 등의 행위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손실

본 위험은 이 약관이 첨부되는 보험증권의 제 담보조건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 약관의 제 담보조건에 상반되는 보험증권 본문의 제 부담 조건은 포기되거나 교체되며, 무효이다. 본 약관은 보험회사의 증권번호의 증권에 첨부되어 한 부분을 형성한다.

일자 :

서명 :

기업휴지보험 특별약관 No.3
(총수익방식 - 상업 및 비제조업용)

이 보험은 이 증권에 명시된 금액 및 분담비율은 기업휴지가 발생되었을 때 각 항목에 적용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증권의 제 규정은 각 항목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 1항 부담내용

1. 이 증권은 이 증권에 표기된 장소에 위치하고, 피보험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영업장에서 보험기간중 보험가입위험에 의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손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불가피한 기업휴지의 결과로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2. 이러한 손실 또는 파손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기간의 만료일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손실 또는 파손된 때로부터 동 손해부분을 정당하고 신속하게 개수 또는 대체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기업휴지로 인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실제손해를 보상하되, 그 금액은 휴지함으로써 계속 지불할 필요가 없는 제 비용을 공제한 총수익의 감소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직전과 같은 가동상태로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정상경비(임금포함)는 계산됩니다.
3. **조업의 재개** : 피보험자는 손실의 발생여부에 불문하고,
 - (a) 이 증권상의 보험의 목적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업을 재개하거나
 - (b) 이 증권상의 소재지 또는 다른 장소의 상품이나 물건을 사용하여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여야 하며, 그 경감액은 손해액 사정에 계산됩니다.
4. **총수익** : 이 보험에서 총수익이라함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 (a) 총 순판매액과,
 - (b) 사업경영에 따른 기타수익에서,
 - (c) 포장재를 포함한 판매상품원가와,
 - (d) 피보험자의 용역공급에 직접 소요된 원부자재대와,
 - (e)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이 아닌 전매를 위한 타인(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으로부터 구매한 용역비를 공제한 금액, 기타 어떠한 금액도 총수익에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총수익을 결정함에는 손실 또는 파손 이전의 사업실태와, 그 이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능한 경험실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5. 「정상」의 정의 :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태의 상태

제 2 항 부담확장

1. **건물의 개축 및 신축** : 이 증권은 개축, 증축 또는 신축물이 건축중이거나 완공 후 또는 점유 중에 손상 또는 파괴됨으로써 야기된 손해를 그러한 재물(증권상의 구내 또는 구내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건축자재, 보급물자, 건축이나 점유에 따는 기계 및 장비를 포함합니다)의 손상이나 파괴로 피보험자의 조업개시가 지연될 경우에 한하여 이 증권상의 제 규정에 따라 확장담보합니다.
회사의 보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적용하며,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조업이 재개되었을 날부터 계상합니다. 이 증권에 자동살수장치특약이 첨부되었으며, 이 조항은 그 자동살수장치특약을 배제 또는 보완하지 아니합니다.
2. **손해경감비용** : 이 증권은 이 증권상의 손해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생긴 비용(소화작업을 위하여 생긴 비용은 제외)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합계액은 손해경감비용에 대하여는 분담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관계당국에 의한 휴지** : 이 증권에 기재된 구내에 가까운 재물이 부담위험으로 인한 파괴 또는 손상의 결과, 그 구내의 출입이 관계당국에 의해 특별히 금지된 경우, 금지된 기간동안에 대하여 2주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지항으로 입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를 확장담보합니다.

제 3항 공동보험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실 또는 파손된 직후 12개월 간에(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얻어질 총수익에 해당 분담율(이 증권상의 첫 페이지 또는 배서에 명시)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이 기업휴지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상으로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4항 제한 및 면책

1. **전기조항** : 회사는 화재가 병발하지 않는 한은, 인위적인 전류로 인한 전기기기나 장치 및 전선에 전기적 사고나 방해에 따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화재가 병발한 때에는 병발된 화재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보상할 책임

을 부담합니다.

2. **제한 - 전자자료 처리매체** : 전자매체나 전자자료 처리 또는 전자 기록을 포함한 전자처리설비에 부수되는 프로그램기록의 보험가입위험으로 인한 손상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기간은 다음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a) 연속 30일간 또는,
 - (b) 파손 또는 손상된(전자매체 이외의) 다른 보험의 목적을 개축, 수리 또는 대체함에 소요될 기간 중 어느 것이든 장기간
3. **원자력 조항** : 이 증권이나 배서에서 「화재」란 그 관리여부를 불문하고 원자력의 반응, 방사능 및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는 직접, 간접, 근인, 원인,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증권이나 배서로 담보되고 있는 화재 및 기타 위험에 기인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이 증권이나 배서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도 아니며, 부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원자력의 반응, 방사능 및 방사능오염으로 초래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전기(前記)한 조건과 이 증권의 규정에 따라 이 증권에서 담보됩니다.
4. **특별면책** : 회사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증가된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 (b) 증권상의 소재지에서 보험의 목적을 개축, 수리 또는 대체하거나, 조업의 재개나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파업자나 기타 인에 의한 방해
 - (c) 임차권의 허가, 계약 또는 주문의 정지, 소멸 또는 취소. 단, 그것이 기업휴지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총수익에 영향을 미친 기간동안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5 항 기타규정

1. **보험의 목적의 관리** : 이 보험은 다른 어떤 사람(피보험자가 아닌)의 행위나 태만을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홀히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2. **분할계약조항** : 이 증권이 둘 이상의 건물이나 수용동산을 담보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건물이나 수용동산에 대한 보험조건의 위반은 보험조건의 위반이 없을 때의 다른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재산과 경영의 조사** : 회사 또는 회사의 부서는 회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피보험

자의 재산과 경영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의 조사권리도 아니고, 피보험자나 타인을 위하여 그 재산이나 경영상태를 판단 또는 보증하거나 제 법규에 부합함을 밝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4. **보험조건 개방조항** : 이 보험의 유효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초일의 45일 이전에 또는 법규에 부합되고 보험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아 채택된 변경사항이 추가보험료 없이 확장담보하는 배서나 특약일 경우에는, 그 확장담보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특약이나 배서가 대체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효합니다.
5. **손해조항** : 어떤 손해로 이 증권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는 아니합니다.
6. **비례보상 조항** : 이 증권상의 책임은 이 증권에서 부담하고 있는 다른 보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부담하고 있으면, 다른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총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이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7. **안전대비책** : 피보험자는 통제할 수 있는 한까지의 이 특약에 규정한 안전대비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지되지 못함 기간동안에 영향을 받은 소재지에 한해서 이 보험의 효력은 중지됩니다.
8. **손해발생시의 요망사항** : 피보험자는 기업휴지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기업휴지기간의 연장을 초래할 재산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면에 의한 기간연장이 없는 한, 재산손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고내용을 피보험자가 서명 및 확인하여 다음 내용을 진술하는 사고증명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기업휴지가 유발된 재산손해의 사고원인과 시간
 - (b) 사업상의 피보험자 및 다른 제3자의 이익
 - (c) 이 증권이 부담손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효하건 안하건 간에 담보하는 모든 다른 보험계약
 - (d) 이 증권발행 이후의 사업의 명칭, 성징, 소재지, 방해요인 및 소유관계의 변경사항
 - (e) 손해발생 시에 건물 및 그의 부분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점유되었는가그리고 피보험자는 모든 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목록 사본을, 기업휴지의 실제가액과 보험금 청구액을 산출한 기초가 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잔여분 재산전체를 적절하게 회사의 지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든 경리장부, 청구서, 영수증과 기타 전표, 만약 원본을 분실한 때에는 확인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췌본 및 그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9. 대위권 조항 :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로 인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서면으로 사전에 포기하여야만 이 보험은 유효합니다.

① 일용급여면책 특별약관

본 보험증권에 첨부된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분담조항 대신에 아래의 분담조항으로 대체하고 본 보험회사는 이후 규정하는 여하한 일용급여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니다.

분담조항 :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실 또는 파손된 직후 12개월간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얻어질 총수익에서 12개월간의 일용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이 증권이 첫페이지 또는 배서에 명시된 해당 분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이 기업휴지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이상으로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급여 비용의 정의 : 임원, 집행위원, 각부서책임자, 계약상의 종사원 및 여타 주요종사원을 제외한 피보험자간의 모든 일시적 피용인에게 지불하는 전체 급여비용

②일용급여 제한담보 특별약관

본 보험증권에 첨부된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분담조항 대신에 아래의 분담조항으로 대체하고 이후 규정하는 일용급여비용에 대한 본 보험회사의 책임은 사고직후 연속된 90일 이내에 휴업기간 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국한하기로 합니다.

분담조항 :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실 또는 파손된 직후 12개월간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얻어질 총수익에서 상기 90일(90일 제한기간은 본 보험증권 첫페이지에 명시하거나 배서로써 기간을 늘릴수도 있다.)이후 12개월 부분에 해당하는 일용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이 증권의 첫페이지 또는 배서에 명시된 해당 분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이 기업휴지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이상으로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합니다.

일용급여비용의 정의 : 임원, 집행위원, 각부서 책임자, 계약상의 종사원 및 여타 주요 종사원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모든 일시적 피용인에게 지불하는 전체 급여비용

주: 90*일의 제한기간은 본 보험증권 첫페이지에 명시하거나 배서로써 그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③전자자료 처리매체 확장담보 특별약관

본 보험증권에 첨부된 서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아래 확장담보중 한곳을 표시하여 완성하시오)

「제한 - 전자자료처리매체」라는 표제의 조항을 삭제함
「제한 - 전자자료처리매체」라는 표제조항의 부항A를
「연속된 _____」으로 변경합니다.
(90일간 또는 180일간)

본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 이 보험증권상의 책임은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부담되고 있는 손해를 다른 보험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담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보험이 본 특약이나 본 특약과 유사한 부담을 포함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부문하고 모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이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④보험료 정산 특약 (기업휴지 보험)

보험가입금액 _____ 모든 기업 휴지보험의 보상한도액의 백분율
미화 _____ 불 _____ %

1. 이 특약의 취지는 이 증권으로 규정된 보험조건을 보험료 정산 조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납입보험료는 잠정보험료가 되며 이 증권은 이 특약의 제 조항에 규정된 범위까지 변경됩니다. 기타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2. **보상한도액** : 손해 발생시에는 이 특약을 포함하여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a),(b),(c) 및 (d) 의 가장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 이 증권이 위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으로 되었거나 또는 이 증권에서 담보

하는 손해로 모든 기업휴지보험증권(이 특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증권이든 아니든)이 보상하여야할 보상한도액에 대한 위에 명기된 백분율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증권에서의 보상책임은 어떤 손해에 대한 동일한 백분율 또는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b) 이 증권의 책임 분담 조항을 적용한 결과로 생긴 책임한도액

(c) 이 증권이 책임분담 조항에 명기된 총수익의 백분율을 기준한 보험료 정산 조항을 고려하여 당해 물건의 손해일로부터 직후의 12개월 동안에 획득할 수 없었던 (손해가 없었다면) 총 수익에 명기된 백분율에 대한 이 증권의 분담율을 초과하지 않은 책임 한도액

(d) 회사가 접수한 사고일 이전의 최종 총수익 통지서에 상당하는 그 통지서 작성기간 동안의 실제 총수익에 대한 손해액의 비율이 이 증권에 해당되는 백분율을 초과하지 않은 책임한도액

3. **다른 보험** : 이 보험은 사고 당시에 이 증권에 첨부된 이 특약을 포함하여 약관이나 특약에 포함된 동일한 방식, 보상내용, 조건 및 규정으로 인수하지 않는 유효한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보험의 보상책임액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책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4. **통지조항** : 이 보험에서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서 미리 정한 양식(별첨)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회사에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이 특약의 책임이 개시일에는 이 증권에 정의된 것과 같은 총수익을 나타내는 통지서. 다만 그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최근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 매 회계연도 마감일 후의 120일 이내에는, 전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상기와 같은 통지서

(c) 보험기간의 만기 또는 해지후의 120일 이내에는 상기와 같은 통지서. 다만 피보험자의 최근 회계연도인 마감일로부터 이 증권의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보험료 정산 조항**

(a) 이 증권의 잠정보험료는 이 특약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종통지서를 접수한 후에 정산됩니다.

(b)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이 증권의 책임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 특약 책임개시 이전의 기간에 적용될 보험료는 완전히 경과된 것으로 보며 보험료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c) 이 특약의 책임기간중에 이 특약에 명기된 백분율 또는 증권에 명기된 요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정산된 보험료는 그러한 변경이 개시된 날 사

이의 경과된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여기에 정하여진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d) 보험료 계산을 위한 전술한 기간에 부분적으로 적용될 모든 통지된 총수익은 그 각각의 기간에 비율적으로 계산됩니다.
- (e) 모든 통지된 총수익은 책임 분담 조항에 명시된 백분율에 따라 정산되며 또한 이 특약에 명기된 것과 같이 모든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이 증권의 백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증권의 총경과보험료는 만약에 이 특약이 첨부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특약으로 담보되는 각각의 기간에 대한 총수익에 이 증권이 명기된 비율을 적절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 (f)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총경과보험료가 잠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초과분을 피보험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미화 50불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g) 만약에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서 요구하는 총수익에 관한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이 증권이 단기 요율기준으로 해지될 경우에는 이 특약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 특약으로 보험료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가액의 확인** : 회사 또는 회사에서 지명한 대리인은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당 보험목적물을 조사하거나 피보험자의 장부나 기록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특약으로 보상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보험증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므로써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어떠한 내용이나 조건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가액보고서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 정산 특약)

귀하

날짜 :

증권번호

피 보험 자 :

소 재 지 :

가액보고서 :

부터

까지

대리점주소

- A. 연간 순판매액(제조업, 비제조업, 판매업) \$
총판매액에서 할인, 환급, 불량계약 및
선급 운임을 공제한 금액
- B.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수익을 더함
1. 현금 할인 환수액 \$
2. 수수료 또는 임대료 \$
3. \$
- C. 합 계(A+B) \$
- D. 차감경비:
1. 원재료비 \$
2. 가공비용 또는 서비스용 \$
3. 포장재료를 포함한 판매상품 \$
4. 계속되는 계약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외부용역(종업원 제외) \$
5. 총차감액 \$
- E. 총수익(C-D) \$
임금 부담보 특약이 붙은 경우에는 E에서 차감
- F. 총 임금 비용 \$
분담조항에 대한 기업휴지 기준(E-F) \$

회계연도 종료는 매년

입니다.

(날 짜)

이 보고서는 위에 명시된 기간에 대하여 보험증권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서 정확하고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회사명 :

성 명 :

직 위 :

확장위험담보특별약관

(다음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폭풍, 태풍, 선풍, 우박, 폭발, 항공기, 차량, 연기로 인한 위험을 부담함)

1. 이 증권은 보험료 와 추서배서와 이 특약 그리고 이 특약이 첨부된 증권상의 조건, 조항과 규정에 따라, 폭풍, 태풍, 선풍, 우박, 폭발, 폭동, 동맹파업에 가담한 폭동, 민간소요, 항공기, 차량과 연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화재로 인한 손실과 손해도 포함함)를 확장하여 부담한다.
2. 이 특약은 이 특약이 첨부된 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이 특약이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각 물건별로 적용한다.
3. 이 확장위험담보특별약에 의하여 부담되는 위험에 대하여 다른 추서나 배서(이 특약은 포함하지 아니함)를 포함하여 이 증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재란 용어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관련된 위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로 대용한다.
4. **건물붕괴조항** : 이 특약이 첨부되어 있는 증권에 건물붕괴조항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붕괴가 이 특약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건물 붕괴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부담비율조항** : 당회사는 (1)보험금의 수취가능성 여부 또는 이 보험에서 부담되고 있는 추가위험을 다른 화재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 보험가입금액의 다른 총화재보험가입금액(보험의 목적)이 부담되어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부담되었을 다른 화재보험계약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과 (2) 보험금의 수취가능성 여부를 막론하고 이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거나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을 다른 보험계약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다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보험에 의하여 부담되는 손해액은 이 특약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인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확장위험담보부 화재보험이나 또는 폭풍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에서 부담되어 있는 어떤 손해가 이 보험이나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전술한 다른 보험에서 부담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손해(이하 합동손해라 한다)에 대한 각 보험종목별 책임한도는 먼저 동일 종목의 보험들을 하나의 보험계약인 것과 같이

취급하고 이 보험과 같은 동종보험이 합동손해액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을 동종 보험 한도손해액의 총한도손해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 특약하에서 부담하는 당회사의 합동손해액에 대한 책임은 이 보험 및 이 보험과 같은 동종보험의 총한도손해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이 보험의 한도손해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술한 합동손해 라는 용어는 이 특약과 다른 보험계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손해로서 공제금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공제금액을 차인한 잔여손해액을 의미한다.

6. **폭풍과 우박에의 적용조항** : 증권상의 보통보험약관 제6조(b)는 이를 삭제한다. 당회사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a) 서리 또는 한기후 (b) 얼음(우박은 제외),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조파 또는 범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것이 바람에 의한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c) 당회사는 바람으로 인한 여부를 불문하고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우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지붕벽의 손상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에 의하여 보험가입건물의 내부가 또는 건물내에 수용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d) 바람또는 우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철수기 또는 배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건물내에 수용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건물 밖에 있는 양곡, 건조, 짚 또는 기타의 곡물 (b) 풍차, 바람펌프 또는 이들의 탑 (c) 농작물 저장고 (또는 그 수용물) (d) 직제복피물, 표지물, 옥외라디오나 텔레비전장치 또는 금속제 연통 (e) 건축중에 있는 건물(또는 그 수용물) 그러나 사방이 완전히 벽으로 쌓이고 모든 의문과 외벽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붕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7. **폭발에의 적용조항** : 폭발에 의한 손해는 Fired vessel(내부에 불을 가지고 있는 용기)의 화실(또는 연소실)내 또는 화염도관이나 연소가스의 송관내에 가스 또는 미 소진연료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 회사는 다음의 건물이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차용물이거나 그의 관리하에서 운용되고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 증기보일러, 증기기관, 증기터빈 또는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b)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

다음사항은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폭발은 아니다.

(a) 폭발로 인하지 않는 격동

(b) 전류

(c) 수충

(d) 배수관의 파열

이 증권의 모든 규정(보통보험약관 제7조의 (h)에 한해서는 여기서 명백히 변경된 때에는 예외)은 언제나 이 특약에 부합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용된다.

8. **항공기 및 차량에 의해 손해에의 적용조항** :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란 용어는 육지 또는 궤도상을 달리는 차량을 의미하고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 또는 차량에 의한 손해는 항공기 또는 차량이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므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말하되 항공기에 의한 손해에는 항공기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회사는 (a) 피보험자의 소유이거나 피보험자 또는 약정서상의 차용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한 손해 ;(b) 울타리, 차도 또는 잔디에 끼친 차량에 의한 손해 ; (c) 제조중에 있거나 판매중에 있는 항공기 또는 차량의 재료이외의 여러 내용물(항공기 또는 차량내의)를 포함한 항공기 또는 차량에 대한 손해 ; 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연기에의 적용조항**: 이 특약에서 사용된 연기라는 용어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의 연관 또는 통기관에 의하여 연통에 연결되어 있는 난방구나 조리구의 급격하고 이상적이며 불완전조업에 기인한 연기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벽난로 또는 공업기기로부터 나오는 연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전쟁 또는 기타사건 부담보조항** : 이 보험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 사항에 기인 또는 관련하거나 그 결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a)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 또는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 내란,

(b) 폭동, 소요, 반란, 혁명, 음모, 군사력 또는 약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포위상태의 선포 또는 그 유지를 결정하는 사태나 요인, 테러나 불법행위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법상 또는 사실상의 실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를 위하여 또는 관련되거나 그 결과로서 생긴 이상상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음을 피보험자가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회사가 소송절차 등을 취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을 들어 어떤 손실이나 손해를 이 보험계약으로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실 또는 손해가 보상되어야 한다고 입증하는 책임은 피보험자에 있다.

11. **간접손해부담보조항** : 당회사는 소득에 관한 손해, 자연에 의한 손해, 악화에 의한 손해, 시장성에 관한 손해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이 특약이 사업중단, 특별비용, 추가생계비, 임차료, 차지권(借地權), 이윤과 수수료 또는 간접손해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증권에 첨부되었을 때의 적용조항** : 이 특약이 사업중단, 특별비용, 추가생계비, 임차료, 차지권, 이윤과 수수료 또는 간접적 손해를 부담하고 있는 보험증권에 첨부되었을 때에는 손해에 적용되는 직접적 이란 용어는 그 증권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된 보험의 목적의 직접적인 손해에서 결과된 손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나 차용자의 영업이 기재된 장소에서 파업으로 중단중인 때에는 당회사는 손해를 입은 재산을 재건축, 수리 또는 교체하는 사람이나 영업의 재개와 계속에 관계되는 사람의 방해에 기인하는 손해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별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이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증권에서는 동 증권에 첨부된 다른 확장 위험담보배서 대신 이 특약조항이 적용된다.)

1. 담보범위 :

이 특약에 대한 할증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고 이 특약과 이 특약이 첨부된 증권상의 제 급정에 따라 원료, 완제품 및 반제품등의 총괄적인 재산에 대하여 이 보험증권은 모든 다른 위험들로 인한 직접의 물리적 손해를 확장하여 담보한다.

2. 공제금액(피보험자 자기부담액) :

다음의 위험 ; (1)폭풍 또는 우박 (2)화재, 낙뢰, 항공기, 차량, 연기, 폭발, 폭동 또는 시민소요.;을 제외한 기타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100을 공제한다.

이 공제금액은 각 건물이나 구조물마다 따로 적용한다.

3. 면책

이 보험증권은 다음의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a) 자연적인 마멸, 악화, 먼지 또는 부식, 곰팡이, 부패, 고유의 결함, 연무, 연기, 농업 또는 공업작용으로부터의 수증기나 가스. 원심력으로 인한 파열 : 포장도로, 기초, 벽,마루, 지붕 또는 천장의 고정, 분해, 축소 또는 확

장, 동물, 새, 해충 또는 기타의 곤충 : 그러나 이 손해가 결과하는 경우에는 당 회사는 그 결과 손해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b) 다음의 사항에 의한 손해

(1) 하수도 또는 배수관을 통하여 역류하는 물

(2) 지하수, 인도, 차도, 기초, 벽, 바닥 또는 마루바닥이나 이들의 문이나 창문 또는 기타 출구를 통하여 흘러나오거나 새어 나오거나 스며 나오는 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보험증권으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화재나 폭발로 인한 결과로 인한 손해는 그러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당회사는 그 결과 손해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c) 변명이 되지 않는 또는 모호한 분실, 또는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감소 또는 피보험자나 이들의 관련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나 거짓 행위 또는 태만

(d) 악행, 만행, 절도에 의한 손해나 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었다가 발생한 손해

(e) 건설업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법의 집행, 또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수리나 파괴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손해

(f) 수도, 가스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또는 화재방지시설에 대한 손해. 또는 증권에 기재된 건물이 비워있는 동안 엷으로 인하여 상기의 시설들로부터의 누출이나 과류로 인한 손해. 그러나 그 건물이 비워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상기 건물의 온도유지에 태만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기의 시설이 배수되었고 물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g)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빈 또는 증기기관내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들에 대한 손해.(그러나, 화실이나 연소실 또는 연소가스가 통과하는 굴뚝이나 통로내에 있는 축적된 가스나 연소되지 않은 연료의 폭발로 인한 직접의 손해는 제외한다.) 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통제하고 있는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빈 또는 증기기관의 폭발로 인한 손해 또는 어떠한 결과 손해이든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보험증권으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화재나 폭발로 인한 결과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 회사는 그 결과 손해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h) 온수보일러나 온수시설내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이들에 대한 손해. 다만 폭발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i) 인공전류로 인한 전기기구, 전기비품, 전기설비 또는 전선에 대한 손해. 그러나 이 보험증권으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화재나 폭발로 인한 결과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 회사는 그 결과 손해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j) 유리에 대한 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바람, 우박, 항공기, 차량, 화재방

지 시설이나 건물자체시설로부터의 유출, 폭발, 폭동 또는 시민소요가 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경우 이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 이 보험증권으로 담보되는 울타리, 포장도로, 수용장과 이에 관련하는 설비, 벽, 간막이, 부두, 선창 또는 도크에 어는 것이나 녹는 것, 선박의 충돌 또는 바람이 몰아오든 그럴지 아니하든 물이나 얼음의 무게의 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l) 바람도 아니고 우박도 아닌 얼음, 눈 또는 진눈깨비로 인한 건물의 밖에 있는 천막의 것이 아닌 금속성의 굴뚝, 간판,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안테나(인입선을 포함), 돛대나 탑에 대한 손해. 그러나 이 보험증권에 대한 추서나 배서에 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m) 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잔디, 나무, 관목 또는 식물에 대한 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항공기, 폭발, 폭동 또는 시민소요 등의 위험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경우 이들 위험에 의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n) 바람이 몰고 오든 그럴지 아니하든 비, 눈, 모래나 먼지로 인한 건물의 내부에 대한 손해.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처음에 건물의 지붕이나 벽이 바람이나 움막으로 직접 실제의 손해를 입고 그 지붕이나 벽의 구멍을 통하여 들어오는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한 건물의 내부에 대한 손해 또는 그러한 손해가 화재, 낙뢰, 항공기, 차량, 폭발, 폭동이나 시민소요, 만행이나 악행으로 야기된 것으로서 이 위험들이 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경우 (2) 그러한 손해가 화재, 낙뢰, 항공기, 차량, 폭발, 폭동이나 시민소요, 만행이나 악행으로 야기된 것으로서 이 위험들이 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경우

(o) 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경우 건설중에 있는 건설자재를 포함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바람,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폭발, 폭동 또는 시민소요, 만행 또는 악행이 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경우 등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를 포함하여 변경, 수리, 조립중의 재산에 대한 손해. 그러나 이 보험증권으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인한 결과손해의 경우 당 회사는 그 결과손해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전쟁위험 면책조항(이 조항은 이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화재와 낙뢰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에 적용된다.)

당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 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1)(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 또는 주권에 의한, 또는 (2)육군, 해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느 기관에 의한, 또는 (3)그러한 정부, 주권, 기관 또는 군의 대리인에 의한, 사실상의 공격이나 임박하고 있는 공격 또는 예상되는 공격을 저해시키거나 진입시키거나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한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핵분열이나

융합을 동반하는 전쟁무기의 발화, 폭발 또는 사용은 전적으로 그러한 정부, 주권, 기관 또는 군에 의한 적대행위나 전쟁유사행위로 간주된다.(b)폭동, 모반, 혁명, 내란, 찬탈 또는 이러한 사건을 저해시키거나 진압시키거나 또는 방어함에 있어서 정부의 기관이 취하는 행위에 의한 손해.

원자핵 면책조항(이 조항은 이 보험증권에 첨부된 원자핵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화재와 낙뢰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에 적용된다.) : 통제여부에 불문하고 원자핵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또는 상기에 수반하는 행위나 상태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부이든 부분이든 불문하고 이 보험증권에서 부담되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한다.

4. 기타규정

- (a) 이 특약은 이 보험증권에 규정된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 (b) 이 보험증권이 두 개이상의 물건을 부담하는 경우 이 특약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각 물건에 별도로 적용된다.
- (c) 이 특약에 의한 손해보상금 청구는 면책 F.와 H.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점거의 변경이나 불검거 때문에 제지되지 아니한다.
- (d) 「폭동 또는 시민소요」라는 말은 증권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차용자의 종업원들이 동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동맹파업의 행위에 의한 직접의 손해를 포함하며 또한 폭동이나 시민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때와 장소에서의 약탈과 강탈에 의한 직접의 손해를 포함한다.

5. 부담비율

- (1) 당 회사는 보험금의 수취가능성 여부 또는 이 보험에서 부담되고 있는 추가 위험을 다른 화재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 보험가입금액의 다른 총 화재보험가입금액(보험의 목적이 부담되어 있거나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부담되었을 다른 화재보험계약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당 회사는 보험금의 수취가능성 여부를 막론하고 이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발생된 손해를 부담하거나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을 다른 보험계약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보험에 의하여 부담되는 손해액은 이 특약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확장위험부담 화재보험이나 또는 폭풍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에서 부담되어 있는 어떤 손해가 이 보험이나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전기한 다른 보험에서 부담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손해(이하 「합동손해」라 한다.)에

대한 각 보험종별 책임한도는 먼저 동일종목의 보험들을 하나의 보험계약인 것과 같이 취급하고 이 보험과 같은 동종보험이 합동손해액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을 동종 보험한도손해액의 총한도손해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 특약하에서 부담하는 당 회사의 합동손해액에 대한 책임은 이 보험 및 이 보험과 같은 동종보험의 총한도손해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이 보험의 한도손해액의 비율 이상으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술한 「합동손해」라는 용어는 이 특약과 다른 보험계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손해로서 공제금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공제금액을 차감한 잔여손해액을 의미한다.

6. 이 특약이 휴업, 휴학비, 특별비용, 임대가액, 임대차이익 또는 기타 결과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 : 손해에 적용되는 「직접의」라는 말은 담보되는 위험에 의하여 보험증권 기재의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의 손해로부터 야기되는 동 증권상에 제한되어 있고 또 조건으로 되어있는 바의 손해를 의미하며, 증권기재의 건물에 소유자나 차용자의 사업이 증권기재의 지역에서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되는 경우 당회사는 타인이 손해를 입은 목적물의 재건축이나 수리 또는 대치를, 또는 사업의 재개시 또는 계속을 방해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S.R)

(다음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폭풍, 태풍, 선풍, 우박, 폭발, 폭동, 동맹파업에
가담한 폭동, 민간소요, 항공기, 차량연기로 인한 위험을 부담함)

1. 이 증권은 보험료 와 추서, 배서와 이 특약 그리고 이 특약이 첨부된 증권상의 조건, 조항과 규정에 따라 폭풍, 태풍, 선풍, 우박, 폭발, 폭동, 동맹파업에 가담한 폭동, 민간소요, 항공기 차량과 연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화재로 인한 손실과 손해도 포함함)를 확장하여 부담한다.
2. 이 특약은 이 특약이 첨부된 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이 특약은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각 물건별로 적용한다.
3. 이 확장위험담보특약에 의하여 부담되는 위험에 대하여 다른 추서(이 특약은 포함하지 아니함)를 포함하여 이 증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재」란 용어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관련된 위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로 대용한다.
4. 이 특약이 첨부되어 있는 증권에 건물 붕괴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붕괴가 이 특약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도 그 건물 붕괴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부담비율 조항**
 - (1) 당 회사는 증권의 유효여부, 보험금의 수취 가능성 여부 또는 이 보험에서 담보되고 있는 추가위험을 다른 화재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 보험가입금액의 다른 총 화재보험가입금액(보험의 목적이 부담되어 있는)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다.
 - (2) 당 회사는 증권의 유효여부, 보험금의 수취 가능성을 불문하고 이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는)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개별 재산별로 담보하고 있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타 보험의 약관내용이 이 보험증권과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개별 재산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6. **폭풍, 태풍, 선풍 및 우박에의 적용조항** : 당 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a)서리 또는 한냉기 (b)눈보라, 조파, 파도 또는 범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여는 그것이 바람에 의한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 회사는 바람으로 인한 여부를 불문하고 (a)비, 눈, 모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우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지붕, 벽의 손상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먼지에 의하여 부보건물의 내부가 또는 건물내에 수용된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b)바람, 태풍, 선풍, 또는 우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철수기 또는 배수관 또는 배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건물내에 수용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증권에 첨부된 배서로서 부담되지 않는 한 당회사는 다음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다.

(a) 건물밖에 있는 양곡, 건초, 짚 또는 기타의 곡물

(b) 풍차, 바람펌프

(c) 농작물, 야적고 또는 그 수용물

7. **폭발에의 적용조항** : 당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유, 피보험자에 의하여 운영 또는 관리되거나 이 증권에 기재한 건물내에 수용되는 증기보일러, 증기기관, 증기터빈 및 속도조정륜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폭동, 동맹파업에 가담한 폭동과 민간소요에의 적용조항** : 당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폭동 또는 민간소요에 가담한 자, 동맹파업자, 공장에서 축출된 노무자 또는 노동소요에 가담한 자 및 정치단체를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다. 당회사는 또한 상술한 위험과 관련하여 법적 단체의 행동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직접으로 발생한 손해(화재 또는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증권의 (a)작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b)몰수, 징발, 징용 및 파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합법 또는 불법을 불문하고 보험의 목적물의 소재지의 정부, 중앙관서, 시 또는 지방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증권에 인쇄된 조건 및 첨부된 배서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배서에 규정한 폭동, 동맹파업에 가담한 폭동과 민간소요보험이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기간 만료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당회사는 보험료 또는 추가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증권에 부보한 재산이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서

삭제됨에 따라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해지될 경우에는 당회사는 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계속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취득한다.

9. **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의 적용조항** : 항공기에 의한 손해는 항공기로 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를 포함한다.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란 용어는 육지 또는 궤도상을 달리는 차량을 의미하고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 회사는 다음의 손해 ; (a) 피보험자의 소유거나 피보험자 또는 약정상의 차용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한 손해 (b) 울타리, 차도 또는 잔디에 끼친 차량에 의한 손해 (c) 제조중에 있거나 판매중에 있는 항공기 또는 차량의 재고 이외의 내용물을 포함한 항공기 또는 차량에 의한 손해 ; 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 **연기에의 적용조항** :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연기」라는 용어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의 연관에 의하여 연통에 연결되어 있는 난방구나 조리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 조작에 기인한 연기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벽난로, 또는 공업기기로부터 나오는 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11. **전쟁 및 기타사건 부담보조항**

당회사는 손실 또는 손해가 근원 혹은 규모, 직접 혹은 간접, 원인 또는 근인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건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에서 부담하는 위험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즉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 또는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 내란, 폭동, 봉기, 모반, 혁명, 음모,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포위상태의 선포 또는 그 유지를 결정하는 사태. 그러나 「계엄령 또는 포위상태」에 관한 면책부분은 폭동 및 민간소요위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간접손해 부담보조항**

당 회사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악화에 의한 손해, 시장성 상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여하한 종류의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13. **이 특약이 기업휴지(사용 및 점유) 특별비용, 추가생계비, 임차료, 차지권, 이윤과 수수료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증권에 첨부되었을 때의 적용조항** : 이 특약이 기업휴지(사용 및 점유)와 특별비용, 추가생계비, 임차료, 차지권, 이윤과 수수료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증권에 첨부되었을 때에는 손해에 적용되는 「직접

적」이란 용어는 그 증권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담된 보험목적의 직접적인 손해에서 결과된 손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나 차용자의 영업이 기재된 장소에서 파업으로 중단중인 때에는 당회사는 손해를 입었거나 파괴된 재산을 재건축, 수리 또는 대체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복구해서 계속하는 사람의 방해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증권에 사용하는 「회사」란 용어는 「회사들」로 해석하여야 한다.

파괴행위 및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담보 특별약관
(확장위험 담보 특약조항에 한하여 사용함)

1. 확장위험담보 특약조항이 첨부된 화재보험증권의 조항과 이 특약조항의 부담을 전제로 이 보험증권의 페이지에 표시된 보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상기 확장위험담보 특약조항은 파괴행위 및 악의적인 위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담보한다.
2.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파괴행위 및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란 용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실질적 보험가입재산에 대한 파괴를 의미한다.
3. 부모재산에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증권에 이 특약조항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당회사는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유리(유리조 건물이외)에 입은 손해
 - (b)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실질적 상해 또는 이 증권에 부모된 건물의 파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함
 - (c)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차용물이거나 그의 관리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 (d) 감가상각 지연 또는 시장성 상실로 인한 손해. 그러나 온도 또는 습도의 변화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는 배서가 이 증권에 특별히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함.
4. 이 특약조항이 기업휴지, 특별비용, 임차료, 차지권(借地權) 또는 기타 간접손해를 부담하는 증권에 첨부되었을 때에는 당회사는 상기 제3항의 (b),(c) 또는 (d)호에 열거된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재산에 발생한 손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화재보험증권의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백기간이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이 특약조항상의 보상책임에 적용을 받는다.

당회사는 건물이 30일을 초과하여 공백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공백기간이 이 특약조항의 발효일자 이전에 개시여부를 불문하고 이 기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6. **핵 면책** : 핵반응, 핵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이 전면 통제 여부를 불문하고 또는 상기 위험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행위나 상태로 인한 손해는 이 특약으로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손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원인 또는 근인,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경위나 악의적인 위해로 야기되었거나 원인이 되었거나 혹은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건물 및 시설장비)

1. 이 특약이 첨부된 증권에서 상기증권의 각 조항 중 「시가」라고 하는 문구는 모두 「재조달가액(감가상각비 공제 없음)」으로 수정 사용됩니다.
2. 이 특약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타인의 재산, 가재도구 또는 피보험자의 주거용 건물내에 있는 주거용 물건과 교본, 서화, 교직물, 조상, 대리석, 조각돌, 청동기, 희귀서적, 고대 은제품, 도기류, 희귀성 초자품, 골동품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품, 희귀품 또는 고대 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당 회사에 의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a)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과 같거나 80%이상일 때 :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 전체. 그러나 어떤 경우여라도 보상금이 가입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b)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의 80%미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text{보험가입금액} / \text{재조달가액}$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a)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b)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물(건물 또는 구축물은 동일구내상)을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하지 않거나 수리 또는 복구할 때까지의 손해
5. 회사는 보험의 목적물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가 완료할 때까지는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수리 또는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시각(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하되 손실발생 후 180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하는 조건으로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이 특약에 의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a)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 (b) 동일한 구내에 위치하고 피해재산과 점유 및 용도가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 (c)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7. **분담보상조상** : 이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이 특약의 담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부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수취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이 특약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상기 각 조항을 적용합니다.

해일 및 압축기구 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

1.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호수 또는 해일에 직접적으로 기인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해일이라 함은 바람에 의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면의 상승을 뜻하며 해면상승에 의한 범람 및 제방파괴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바람에 의한건 아니건 호수, 못, 저수지, 강, 개울 기타 이와 흡사한 호천의 물결 및 증수로 인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침수의 일반적 또는 일시적인 상태인 홍수에 기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확장위험담보특약조항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에 사용된 증기보일러, 증기배관, 증기터빈 또는 증기기관의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또는 손상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 조항에서 폭발로 보지 아니합니다.
 - (a) 폭발에 기인하지 않는 격동
 - (b) 전호(電弧)
 - (c) 수충(水衝)
 - (d) 배수관의 파열

보험료조정 특별약관

1.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재고자산은 해당보험료의 ()%를 예치보험료로 징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보험자는 매월이 경과된 후 적당한 시기이내에 전월

말 최종일까지의 재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목적물 또는 그 일부가 타 보험에 부보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동 내역도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의 만료시 타보험에 부보된 부분을 공제한 보험계약 기간중에 매 월별 가액의 평균금액을 책정하여 산출한 보험료가 예치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 초과분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예치보험료에 미달할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초과지불 해당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이 보험계약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해약되는 경우에는 당 회사는 해약일까지의 매 월별 가액의 평균금액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해약 환급 보험료 계산은 보험증권상의 약관 및 조건에 따른다.
4. 이 특약은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홍수, 범람, 우담수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은 홍수, 범람, 우담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담보합니다.

양곡전용부두 및 하역시설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당회사는 아래의 조건과 면책조항에 따라 별첨 부표(이하 「부표」라 칭한다.)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모든 부동산 및 동산(제조 및 개량되는 것 포함)과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신탁, 위탁 또는 양도 중 보관하는 모든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당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쯤벌레, 빈대, 흰개미 기타 곤충, 고유의 결함, 숨은 하자, 마손 혹은 점진적 악화, 오염, 녹 또는 건조부패, 곰팡이, 습기 또는 극도의 고온, 전기 및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 2)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핵반응,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그러나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는 (이 특약의 조항에 따라) 보상하며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핵반응,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3)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침략, 적대행위, 외적의 행위, 민간소요,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공권력에 의한 몰수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보험가입금액

당회사는 각 소재지에서 1사고로 발생한 각 손해 또는 일련의 손해에 대하여 부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공제조항

1사고로 발생한 각 손해 또는 일련의 손해는 각기 별도로 사정하며 이와 같이 각각 사정된 손해액으로부터 부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제한다.

분담조항

보험의 목적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체결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회사는 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그 비례적 부분이상을 지급하거나 분담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외되는 물건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 1) a) 항공기, 배, 고속용 차량, 보옥, 보석, 모피제품 또는 의상, 입목,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 또는 동물
b) 계산서, 청구서, 통화, 화폐, 어음, 증권, 증서, 채무관계 증빙서류 및 유가의 서류
c) 필름, 테이프, 음반, 드럼, 전지 및 자료의 처리분석을 하기 위한 기록 또는 보관 매체등을 포함하여 자료의 처리분석 설비 및 매체
- 2) 배서로 담보하지 않는 수송중인 화물
- 3) 매각 또는 질권설정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의 고용원의 관리에서 떠난 재산
네온사인, 자동전자싸인, 판초자 또는 자각초자 및 장식초자. 그러나 화재 또는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는 담보한다.
건축용구 및 자재를 포함하여 건축중인 건물 또는 구축물
구내에 있지 않는 송전 및 배전선

보전유지

보험의 목적의 안전을 위한 모든 보건설비는 전 보험기간을 통하여 정비 유지되어

야 하고 근무시간 후 또는 구내가 비어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당회사의 동의없이 당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보전설비를 철거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조 건

1) 피보험자는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후 15일 이내 또는 당회사가 서면으로 특히 허용한 유예기간내에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사고발생 당시의 시가를 고려하되 어떠한 이익도 포함시키지 않고 산출한 보험의 목적의 각 물건별 또는 각 항목별 손해액과 그 산출명세를 기재한 손해 보상 청구서

b) 다른 보험계약이 있으면 그 명세

당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청구, 화재발생 장소 및 원인, 손실 또는 손해발생상황, 당 회사의 책임과 그 보상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명세서, 설계도, 견적서, 장부, 증빙서류, 송장 또는 그 부분이나 사본, 증거서류, 증거물 및 기타의 보고를 정당하게 요구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작성 입수하여 보상청구 또는 이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표명하는 서약이나 기타 적법적인 서류와 함께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 회사는 본 소정의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당 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손실 또는 손해액을 지급하는 대신 훼손 또는 멸실된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상복구 또는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당 회사는 완전무결하게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으며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당하고 충분할 정도로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 또한 당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될 비용이나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당 회사가 인수한 보험가입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당 회사가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 또는 대체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설계도, 견적서, 측량도, 수량서 및 기타 당 회사가 요구하는 명세서를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 회사가 원상복구 또는 대체의 목적으로 취한 행위 또는 취하게 될 행위를 가지고 곧 당 회사가 원상복구 또는 대체를 선택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구획정리, 건축 또는 기타사항에 관한 시 또는 현행규칙 때문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 회사는 적법하게 원상복구 또는 수리할 경우에 소요되는 정도의 금액을 보상한다.

3) 피보험자는 손해보상의 전후를 불문하고 당 회사의 비용으로 당 회사가 이 보험증권에 따라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취득 또는 대위하는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나 배상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 및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위하여 당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및 조치를 하는데 협조 및 동의를 하여야 한다.

4) 손해발생 당시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의 총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그 자신이 보험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손해의 비례적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보험증권상 보험의 목적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이 조항을 적용한다.

5) 손실 또는 손해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그 분쟁은 일체의 다른 문제와 분리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선정하는 1명의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만일 단일중재인이 선정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요청한 후 2개월이내에 각 당사자가 각기 서면으로 선정하는 2명의 이해 관계없는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2개월이내에 중재인의 선정을 거절하거나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임의로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중재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견은 심리하기에 앞서 중재인이 서면으로 선정하는 심판인의 결정에 따른다. 심판인은 중재인과 같이 심리에 참석하여 그 심리를 주재한다. 당사자 사망은 중재인 또는 심판인의 권한을 무효로 한다든지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재인이나 심판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중재인 또는 심판인을 선정할 당사자나 중재인은 그 후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 및 심판의 비용은 판정한 중재인, 중재인단 또는 심판인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손해액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중재인 또는 심판인의 판정을 받아야 함이 본 보험증권상의 소권취득 또는 소송제기의 전제조건임을 특기 명기한다.

동맹파업, 폭동, 소요특별약관

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폭동 또는 민간소요에 가담한 자, 동맹파업자, 공장에서 축출된 노무자 또는 노동소요에 가담한 자 및 정치단체를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또한 상술한 위험과 관련하여 법적 단체의 행동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직접으로 발생한 손해(화재 또는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이 보험은 (a)작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b)몰수, 징발, 징용

및 파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와 합법 또는 불법을 불문하고 정부보험의 목적물의 소재지의 중앙관서, 시 또는 지방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들에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증권에 인쇄된 조건 및 첨부된 배서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배서에 규정한 폭동, 동맹파업에 가담한 폭동과 민간소요보험이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기간 만료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보험에 부보한 재산이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서 삭제됨에 따라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해지될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계속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취득한다.

해약통지 특별약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한 후 30일동안 이 증권이 유효함을 합의한다.

상품종합담보 특별약관

제1조(부담하는 위험) : 이 특약은 다음에 열거한 위험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제2조(적용지역) : 이 특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합니다.

제3조(부담하지 아니하는 위험) : 이 특약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파손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a) 기계파손, 마모손, 점차적인 악화, 쯤벌레, 해충, 고유의 결함,(이 특약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를 불문합니다) 또는 가공 중에 일어나는 파손
- b) 피보험자의 종업원이나 그 재산을 임차, 임대 또는 위임받은 자의 부정
- c) 지연, 악화, 시장의 상실로 인한 손해
- d) 절도, 쯤도둑 및 재고정리부족, 다만 강도로 인한 손실 손해는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강도라함은 보험의 목적의 수용건물내에 강제로 침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침입할 때에 강제 또는 폭력을 사용하였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e) 불충분한 포장 또는 거친 취급으로 인한 손해 및 파손
- f) 보험의 목적의 수송운송 중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나룻배에 적재중이거나 또는 육상운송수단과 관련된 운송도중은 부담합니다.
- g) 인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에 대한 정당한 노력과 수단 강구를 태만히 한 경우
- h) 낙뢰로 인한 것은 제외하고 전기장치의 단락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전기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화재가 잇달아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시는 회사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나 손실을 보상합니다.
- i) 지진
- j) 전쟁, 침략, 외적행위 또는 적대 및 전쟁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불문합니다) 내란
- k) 홍수(자연수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 l) 핵무기 재료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파손 또는 손실이 온화방열에 의해서 발생한 파손 또는 손실 또는 방사능에 의한 오염 또는 핵연료의 연소와 핵잔재물에 의한 오염 등으로 인한 파손 및 손실. 핵연료의 연소란 핵분열의 자연붕괴 과정을 포함합니다.
- m) 폭동, 파업, 반란, 소요, 군사 또는 민간봉기, 모반, 압류상태 군사적 혁명과 계엄령
- n) (1) 보험의 목적이 비나 눈 또는 모래나 먼지로 인한 손해(바람의 동반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이 바람이나 우박에 의하여 먼저 지붕과 벽에 손해를 입고 바람이나 우박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지붕이나 벽에 뚫린 구멍으로 비, 눈, 먼지, 모래가 들어옴으로써 보험가입 동산에 입힌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살수기나 기타 연관장치로부터의 물에 의한 손해. 다만, 우박의 직접적인 결과로 살수기나 연관장치 자체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부담합니다.

제4조(보상한도액)

- a) 보험의 목적의 소재지;
 최고보상한도액 : US\$
- b) 운송
 - 1) 매 자동차 차량당 최고한도액 : US\$
 - 2) 매 철도 차량당 최고한도액 : US\$

제5조(손해액 보상방법) : 보험의 목적의 이재시에 회사는 원상복구하는 비용(동종 동질)이상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이재시점에 있어서 손실을 입은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과의 비율 이상으로는 손실 또는 경비를 보상하지 아니

하고 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본 보험 이외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이 상으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손해가 증명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대체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적절한 시일내에 수리 또는 동종, 동질의 타 재산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조(월말 재고량 보고 및 보험료조정) : 이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는 감정금액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매 월말 재고량 가격보고와 그 당시에 유효한 타보험 부보상태를 익월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증권 만기시에 전술한 월말보고서와 타보험을 공제한 후에 확정된 위험의 평균치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보험료가 잠정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최저 확정보험료는 \$100.00- 로 합니다.

제7조(통지의무 및 보상액 산출) : 손해발생시 회사는 최종재고량 보고서의 가격에서 기타 타보험에 부보되었을 때는 그 보험부분을 제외한 금액과의 비례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실제 수정액이나 이 특약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월말재고량 가격보고서에서 선의의 과오나 탈락이 발견되었을때에 이를 정정합니다.

제8조(보험목적의 조사) : 회사나 또는 그가 임명한 대리인은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만료후 일년동안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시간에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또한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장부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양식, 배서 및 부전) : 이 특약의 일부분을 형성하기 위하여 첨부되었거나 앞으로 첨부될 모든양식, 배서 및 부전의 조건은 이 증권의 인쇄된 조건과 상위하거나 상위하게 될 때 본 특약에 우선합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책임의 범위)

회사는 이 특약조항에 따라 증권기재 특수건물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므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건물소유자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2조(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특수건물이라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 합니다)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b)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c) 타인의 범위는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 범위)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손해의 범위 및 책임의 한도)

- (a)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1조의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에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소송, 중재 또는 화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i)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액
 - ii) 제6조 제1항 제2호의 비용으로서 회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b) 회사가 보상하여야할 금액은 전항의 손해 중 회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지급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a)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서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
- (b) 전쟁, 폭동 및 그밖에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c) 지진 혹은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d) 원자력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5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가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약정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사고의 발생)

- (a)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을 때는 다음

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자의 주소, 성명, 사고의 상황 및 이들의 사항의 증인이 될자가 있을 때는 그 주소, 성명을 또,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는 일
 - ii)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손해의 방지 또한 경감을 위한 필요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 iii)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을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수단 또는 호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iv)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할 일
- (b)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회사는 iv)의 경우에는 방지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 iii)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사에 의한 해결)

- (a)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신하여 자기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b)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요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는 그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 청구의 절차)

- (a)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이 보험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에 제3조 (a)항에 규정하는 손해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유예기간안에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보험금 청구서 보험증권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b) 전항의 서류에 고의로 불실한 내용을 표시하고 혹은 사건을 은폐하였을 때 또는 그 서류 혹은 증거를 위조하고 혹은 변조하였음을 안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전조의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기간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특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특약규정에 반하지 않으면 화재보험 보통보험약관의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화재보험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므로 인해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재보험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주의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

1. 이 보험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균등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합니다.

(a) 제1회 보험료	책임개시일	원 또는	%
(b) 제2회 보험료	월 일	원 또는	%
(c) 제3회 보험료	월 일	원 또는	%
(d) 제4회 보험료	월 일	원 또는	%

2. 보험계약자가 이 앞의 분납기일 경과후 5일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전액을 납입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당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특약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회분납보험료(자회분납보험료와 기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 지급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이 특약 제2조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효력상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소정보험료를 납입하여 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효력상실로부터 회사의 승낙통지가 발송된 날까지 사이에 발송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보통보험약관의 기타 제 조건은 이 특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살수기 누출 특별약관

(화재보험과 함께 또는 이 특약 단독으로 화재보험증권에만 첨부함)

SECTION 1

이 보험은 살수기 누출에 대한 특별한 금액과 보험료가 있는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물건만을 부담하여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이 특약의 모든 조건과 이 특약이 첨부된 보험증권의 모든 규정은 부담되는 각 물건에 별도로 적용된다.

이 특약에 의한 보험증권은 이 특약에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의 모든 규정에 따라 살수기 누출로 인한 모든 직접의 손해를 담보한다.

이 특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시키지 아니한다.

만약 이 보험이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허락된다면, 당 회사는 관례상의 단기요율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 받는다.

Section2 부담범위

건물담보.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이 건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되어 있는 다음의 모든 부대시설과 증설물이 포함된다. 즉 모든 부동산 정착물과 기계 및 건물의 사용에 관련되는 비품, 또한 살수기 누출에 의한 자동살수기시설의 부분품의 파손이나 손실을 입음에 직접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살수기

시설의 수리비나 대체비용, 그러나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특약에 의한 이 보험은 다음의 비용을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발굴비용 (2) 땅 고르기 비용 (3) 가장 낮은 지하실에 있는 또한 그러한 지하실이 없는 경우라도 지하에 있는 기계, 보일러 및 엔진의 기초를 포함한 벽돌이나 돌 또는 콘크리트의 기초가 지하에 있는 말뚝, 방파제, 파이프, 연관, 전선 및 배수시설의 비용, 이러한 재산의 가액은 면책인한 공동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용물의 담보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의 수용물을 부담하는 경우 이 보험(이 보험의 제 조건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 수용물을 이 보험증권기재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한하여 부담한다.

저장품만의 담보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이 저장품만을 부담하는 경우 이 보험은 통상적으로 피보험자의 점거에 관련하는 (보험증권의 제조건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는)상품, 원료 및 공급자재를 이들이 이 보험증권 기재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한하여 부담한다.

가구류와 정착물의 담보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이 가구류와 정착물을 부담하는 경우, 이 보험은 통상적으로 피보험자의 점거에 관련하는 가구류와 정착물을 이들이 이 보험증권 기재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한하여 부담한다.

이 보험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련하는 그리고 그 유지에 사용되는 재산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계류의 담보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이 기계류를 부담하는 경우 이 보험은 통상적으로 피보험자의 점거에 관련하는 기계류를 이들이 이 보험증권 기재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한다. 이 보험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련하는 그리고 그 유지에 사용되는 재산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종업원 재산의 담보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이 회사의 종업원 재산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증권 기재의 건물과 부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여 부담한다.

개선 및 개량의 담보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이 개선 및 개량을 담보하는 경우 이 보험은 증권기재건물의 개선과 개량에 대한 피보험자의 사용이익을 부담한다.

1. 이 보험증권에서 사용되는 개선 및 개량이라는 말은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임대료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비용으로 만들거나 입수한 증권기재의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 변경물, 조립물 또는 추가물들로서 법적으로 피보험자가 이전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이 보험증권에 사용되는 임차라는 말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불문하고 손해발생시에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임대계약을 의미한다.
3. 개선 및 개량사항이 이 보험증권으로 부담되는 위험에 의하여 보험기간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그 손해를 부담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 (a) 손해발생 후 타당한 기간내에 피보험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대치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실제현금가액
 - (b) 손해발생 후 타당한 기간내에 수리 또는 대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부분의 원래의 조립비를 기준으로 하여 개선 및 개량을 한 날로부터 임차계약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 발생시 임대기간의 미경과 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

확장담보

이 특약에 의한 보험이 동산을 부담하는 경우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증권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타인 소유인 유사한 재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들이 이 보험증권 기재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한하여 부담한다.

담보의 제한

이 특약에 의한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 부담한다.

- (a) 회계장부, 제도, 카드첩 및 기타 기록물(필름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백지 장부, 백지 카드와 기타 이에다 실제로 옮겨 쓰거나 복사하는 인건비를 합계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b) 필름이나 녹음테이프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은 필름이나 모든 백지테이프의 비용

담보되지 아니하는 재산

이 특약에 의한 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서 이 재산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보험으로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간요소의 담보

이 보험과 이 특약부 보험이 기업휴지, 휴학, 특별비용, 특별생활비 임차 또는 임대가액, 임차이익 또는 기타의 결과적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에 적용되는 직

접이라는 말은 살수기 누출로 인한 증권기재 재산의 직접의 물리적 손해로부터 야기되는 이 보험과 이에 첨부되는 특약 및 배서의 제 조건에 의한 손해를 의미한다.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특약과 배서의 제 조건은 이 특약의 제 조건에 우선한다. 그러나 살수기 누출, 자동살수기 시설 부가위험 부담보, 제조건유예 또는 제한보험, 분담비율조항, 경보 또는 감시인 조항 및 원자력 면책조항 등의 제한조건에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SECTION3 용어의 정의

살수기 누출

이 특약에 기재된 살수기 누출이라는 말은 (a) 자동살수기시설로부터 물이나 기타 물질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b)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에 의한 직접의 손해를 의미한다.

자동살수기 시설

이 특약에 기재된 자동살수기시설이라는 말은 자동식의 화재방지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모든 살수기, 배출관, 파이프, 밸브, 부속품, 탱크(이것의 구성부분과 지지대를 포함한다.)의 개별 화재방지장치를 포함한 자동식 화재방지시설과 자동 화재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비자동식 화재방지시설, 소화전, 스탠드파이프 또는 호스 등을 의미한다.

SECTION4

공동보험조항 (이 조항은 공동보험의 비율이 이 보험증권의 첫페이지에 또는 배서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당 회사는 보험증권 기재의 재산에 발생한 살수기 누출손해에 대하여 이 보험증권의 첫페이지(또는 그 배서)에 기재된, 손해발생시의 그 재산의 현금가액의 백분율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이상으로, 또는 이 보험증권의 그 재산의 현금가액의 백분율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이상으로, 또는 이 보험증권의 전체의 살수기 누출보험에 대한 비율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살수기 누출손해에 대한 총보상청구액이 ()이하이고 또 손해 발생시의 증권기재의 재산에 대한 총보험가입금액의 ()% 이하인 경우에는 손해를 입지 아니한 재산의 특별조사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 조항의 첫 구절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5 면책 및 제한조항

부가위험 부담보조항

이 보험증권의 반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의하여 당 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으로 인한 살수기 누출이나 탱크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화재 (b) 낙뢰 (c) 폭풍 (d) 지진 (e) 진동 (f) 폭발 (g) 공기보일러나 풍수차의 파열 (h) 폭동 (i) 시민소요 (j) 자동살수기시설내에 있지 않는 물 (k) 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실제의 공격이나 임박하고 있는 또는 예상되는 공격을 저해하거나 진압 시키거나 또는 방어함에 있어 (1)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나 주권 또는 육, 해, 공군을 사용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2) 육, 해, 공군이나 또는 (3) 그러한 정부나 주권 또는 군의 대리인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 적대행위 또는 전쟁 유사행위. 이 경우에 원자핵분열이나융합을 이용하는 전쟁무기의 방출이나 폭발 또는 사용은 그러한 정부나 권력이나 당국 또는 군에 의한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행위로 간주된다. (l) 폭동, 모반, 혁명, 내란, 찬탈권 또는 그러한 사건을 저해하거나, 진압시키거나 또는 방어함에 정부기관이 취하는 행위 (m) 당국의 명령

원자력조항

통제여부를 불문하고 원자핵반응이나 원자력방사능 또는 방사선 오염으로 인한 손해 또는 이들에 수반하는 행위나 상태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담되는 살수기누출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던 근인이던 원인이던 또는 전부이던 부분적이던 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이 특약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한다.

조건유예 또는 제한보험

반대규정이 없는 한, 당회사는 다음의 살수기 누출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이 보험 증권기재의 장소에 있는 자동살수기시설"의 수리, 변경 또는 확장(마루나 지붕의 벽이나 받침물을 포함한다)이나 조립 또는 변경공사후 계속 15일의 기간이후에 발생하는 손해
- (b) 이 보험증권 기재의 장소에 있는 건물이 비어있거나 점거되지 아니한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SECTION5 기타조항

자동적용 조항

이 보험이 유효한 기간 중 또는 위험개시 이전 45일이내에 당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감독당국에 의하여 배서나 다른 양식에 의한 할증보험 요율이 확장위험을

부담하는 이 보험에 첨부되는 양식이 변경 채택되는 경우, 이 확장 위험담보부보험은 그러한 배서나 다른 양식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부담한다.

경보 또는 감시인 조항(요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특약의 요율이 인하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인하요율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 회사는 살수기 누출 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같은 형태의 보험의 또는 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같은 재산을 담보하였을 보험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이 특약에 의한 보허가입금액의 비율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살수기 누출보험이외의 이 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손해를 부담하는, 또는 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그 손해를 부담하는 같은 형태의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공동손해로서 명시된 각 보험의 손해보상책임한도액은 마치 그 각 보험이 단 하나의 보험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각 보험은 이들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를 보상책임한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율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공동손해에 대한(이 특약에 의한) 당 회사는 보상책임은 같은 형태의 모든 다른 보험의 총 보상한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 상기의 공동손해라는 말은, 이 특약과 상기의 다른 보험에 다같이 적용되는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를 의미한다.

재산의 통제조항

이 보험은(피보험자 이외의) 다른 사람 행위나 태만이 피보험자의 통제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계약분리조항

이 특약에 의한 이 보험증권이 두개 이상의 건물 또는 이들의 수용물을 부담하는 경우 그 건물 또는 수용물에 있어 보험조건의 위약은 손해발생시에 그 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 또는 수용물에 발생한 손해를 회수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위권 조항

피보험자가 증권기재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손해발생 이전에 포기하더라도 이 보험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잔존물 제거조항

이 특약에 의한 이 보험은 살수기 누출로 인한 손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목적의 모든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손해와 잔존물 제거에 대한 이 보험의 총보상책임 한도는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당회사는 이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하여는 이 조항의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담보되는 재산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이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상으로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배서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당 회사는 살수기 누출에 의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한 건물의 부분의 파괴를 필요로 하는 법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존물 제거비용은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업휴지 손해담보 특별약관 No.4

1.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제규정에 따라서 이 보험은
에 위치하고 피보험자의 구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부보된 부담위험에 의하여 완제품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동
산의 손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불가피한 기업휴지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한다.

2. 이와같은 손실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기간의 만료일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손실 또는 파손된 때로부터 동 손해부분을 정당하고 신속하게 개
수 또는 대체하는 기간중 기업휴지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
을 보상하되 그 금액을 휴지함으로서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제비용을 공제한
수익감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가
동능력으로 재 조업하는데 필요한 정상경비(임금 포함)는 계상되어야 한다.

3. 조업의 재개

피보험자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기업휴지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을 때에는 이
보험증권상의 손실액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 a)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를 불문하고 이 보험증권 소정의 보험의 목
적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조업을 재개하는 것
- b)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나 기타 장소에서 다른 사물을 사용하는 것
- c)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나 기타 장소에서 품목(원자재, 완제품, 반제품)을
사용하는 것

4. 손해경감비용

본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상의 손해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생긴 비용(그러나 소
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생긴 비용은 제외한다.)과 정상비용을 초과하여 보험증권
상의 손해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사용한 완제품을 대체함으로 인해 불가피하
게 생긴 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 비용의 총계는
이 보험계약상의 손해경감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조항은 작용하지 아니한다.

5. 총수익

본 보험에서 총수익이라 함은 다음의 총액을 말한다.

- a) 생산품의 순판매가격의 총액
- b) 상품의 순매상액

- c) 원가를 제외한 기업의 조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
- d) 상기 생산품을 제조하는 원자재
- e)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직접 소비될 원자재 또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에 소비될 자재
- f) 포장한 자재를 포함하여 판매된 상품
- g)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이 아닌 전매를 위하여 타인(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한다)으로부터 구매한 용역이상의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기타 비용이든지 총수익에서 감액할 수 없다.
총수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파손이나 손실된 날 이전의 기업의 실태와 그 이후의 손해가 없었더라면 생겼을 기업의 실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6. 분담조항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정요율과 내용을 고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목적이 파손 또는 손실이 생긴 익일로부터 12개월동안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에 얻어질 총수익의 %에 대하여 이 보험에서 부담된 금액이 가지는 비율이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완제품

회사는 완제품의 손실이나 파손에 기인하는 손해와 상기 완제품을 재생산함에 필요한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관계당국에 의한 휴지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부담되어 있는 위험의 발생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계속 2주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구내출입이 금지된 동안에 생긴 담보손실의 실손에까지도 확장하여 보상한다.

9. 특별면책

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증가된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a) 건축이나 그 수리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 b) 차용권이나 허가, 계약 또는 주문의 정지, 소멸 또는 법령
- c)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파업관계인이나 보험의 목적물을 재건축, 수리 또는 대체하는 사람 또는 조업의 재개나 사업의 계속에 관계하는 사람의 방해
회사는 어떠한 다른 간접적, 원인적인 손실에 대하여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비례보상조항

이 보험증권상의 책임은 본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손해를 다른 보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담보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이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한도로 한다.

11. 용어의 정의

이 보험증권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 가. 원자재 : 원자재라 함은 피보험자가 완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
- 나. 제조중의 상품 : 제조중의 상품이라 함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작업장에서 숙성, 건조 또는 기계조업중 이거나 제조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
- 다. 완제품 : 완제품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포장출하나 판매준비를 마친 생산품
- 라. 상품 : 상품이래 함은 피보험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제조작업중의 상품이 아닌 것으로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된 상품
- 마. 정상 : 정상이래 함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

12. 이재조항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 하여도 이 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한다.

13. 작업과 자재조항

이 보험증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점유가 통상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14. 전기기기 조항

이 조항은 화재보험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화재가 계속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인위적으로 발생한 전류로 인하여 전기기기나 장치(가선을 포함한다.)에 전기적사고나 방해로 말미암아 초래하는 기업휴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화재가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계속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분만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5. 개축 및 신축건물 조항

피보험자는 이 보험증권의 어느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으며 증권기재의 구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이 보험증권은 제 규정과 약정에 따라서 건

축중에 있는 개축, 증축 또는 신축물의 손실을 확장하여 담보한다.

건축 완료후 또는 점유중 피보험자가 조업을 개시하지 못할 만큼 보험의 목적(증권기재의 구내 또는 구내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건축자재, 보급물자, 기계와 건축물이나, 점유물의 부수시설을 포함)에 손실 또는 파손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의 보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적용하며 손해액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업이 개시되었을 날로부터 계상한다. 만일 이 보험증권 소정의 어느 건물이 자동살수장치를 하였다면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어느 건물의 개축이나 확장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허용을 한 때에도 이 보험증권이 첨부된 자동살수장치조항을 포기하든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16. 보험조건 확장조건

보험기간 중에 배서에 의하거나 서식 또는 배서의 대체에 의하여 추가보험료의 추징없이 이 보험조건을 확장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서식, 배서 또는 규정이 회사를 대신하여 요율산정 기구에서 채택된 때에는 확장 또는 확대된 조건은 그 배서 또는 서식이 대체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이익에 적용된다.

17. 대위권 조항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서 사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보험증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18. 원자력 조항

이 보험증권이나 배서에서 화재라 함은 그것이 관리되거나 안되거나를 불문하고 원자핵반응, 원자핵 방사선이나 방사능 오염을 의미하거나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핵 반응, 원자핵 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는 직접, 간접, 근인, 원인이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보험증권이나 배서에서 담보되고 있는 화재 또는 기타 보험에 기인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이 보험증권이나 배서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은 아니며 부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원자핵 반응, 원자핵 방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초래된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전기조건과 이 보험증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증권에서 부담된다.

19. 이 조항들이 폭풍우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증권에 첨부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증권상에 배서하고 이에 대한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폭풍우에 의한 철제연통의 손실이나 파손의 결과로 생긴 기업휴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 채광위험에 적용되는 특별조항

다음의 가, 나 조건은 채광위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가. 이 보험은 증권상에 부담되어 있는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갱도나 지하에 있는 지산의 손실이나 사용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전기한 손해가 지상구조물의 손실에 파손 또는 손실에 기인한 때에는 구조물의 수리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중의 손해만은 이를 보상한다.

나. 이 보험증권의 광산의 채관에 사용하는 건물과 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나 자재급소, 자재창고 및 이에 수용된 자재용구는 이 보험증권에 명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구내 동력시설 파손으로 인한 기업휴지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은 별첨 Schedule에서 부담된 위험으로 구내의 전기, 증기, 가스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발전소, 이에 부수되는 시설, 변압기 및 송전선, 연결기계를 포함하는 기타 장비의 파손 및 손실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를 확장 부담할 것을 약정합니다.

②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이 보험의 매 1년동안의 보험기간 중에 실질 총수익이 이 증권 스케줄에 표시된 추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당해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기납입된 보험료의 3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비율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③ 일용급여면책 특별약관

본 보험증권에 첨부된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분담조항 대신에 아래의 분담조항으로 대체하고 본 보험회사는 이후 규정하는 여하한 일용급여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니다.

분담조항: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실 또는 파손된 직후 12개월 간에(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얻어질 총수익에서 12개월간의 일용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이 증권의 첫페이지 또는 배서에 명시된 해당 분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이 기업휴지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이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급여비용의 정의 : 임원, 집행위원, 각 부서책임자, 계약상의 종사원 및 여타 주

수 있었던(손해가 없었다면)총 수익의 명기된 백분율에 대한 이 증권의 분담율을 초과하지 않는 책임 한도액

- (d) 회사가 접수한 사고일 이전의 총수익 통지서에 상당하는 그 통지서 작성기간 동안의 실제 총수익에 대한 손해액의 비율이 이 증권에 해당되는 백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책임한도액

3. **다른 보험** : 이 보험은 사고 당시에 이 증권에 첨부된 이 특약을 포함하여 약관이나 특약에 포함된 동일한 방식, 보상내용, 조건 및 규정으로 인수하지 않는 유효한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보험의 보상책임액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초과하지 않는 책임한도액

4. **통지조항** : 이 보험에서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서 미리 정한 양식(별첨)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회사에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이 특약의 책임 개시일에는 이 증권에 정의된 것과 같은 총수익을 나타내는 통지서. 다만 그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최근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b) 매 회계연도 마감일 후의 120일 이내에는, 전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상기와 같은 통지서
- (c) 보험기간의 만기 또는 해지후의 120일 이내에는 상기와 같은 통지서. 다만 피보험자의 최근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이 증권의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보험료 정산조항** :

- (a) 이 증권의 잠정보험료는 이 특약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종통지서를 접수한 후에 정산됩니다.
- (b) 이 특약의 책임 개시일이 이 증권의 책임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 특약 책임개시 이전의 기간에 적용될 보험료는 완전히 경과 된 것으로 보며 보험료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 (c) 이 특약의 책임기간 중에 이 특약에 명기된 백분율 또는 증권에 명기된 요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정산된 보험료는 그러한 변경이 개시된 날 사이의 경과된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여기에 정하여진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d) 보험료 계산을 위한 전술한 기간에 부분적으로 적용될 모든 통지된 총 수익은 그 각각의 기간에 비율적으로 계산됩니다.
- (e) 모든 통지된 총 수익은 책임 분담 조항에 명시된 백분율에 따라 정산되며 또한 이 특약에 명기된 것과 같이 모든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이 증권의 백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증권의 총 경과보험료는 만약에 이 특

약이 첨부되기 전의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에 이 특약으로 각각의 기간에 대한 총수익에 이 증권에 명기된 비율의 적절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f)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총 경과보험료가 잠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초과분을 피보험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총 보험료가 미화 50불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g) 만약에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서 요구하는 총수익에 관한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이 증권이 단기요율 기준으로 해지될 경우에는 이 특약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 특약으로 보험료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가액의 확인** : 회사 또는 회사에서 지명한 대리인은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당 보험목적물을 조사하거나 피보험자의 장부나 기록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특약으로 보상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보험증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어떠한 내용이나 조건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가액보고서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 정산 특약)

귀하

날짜 :

증권번호

피보험자:

소재지 :

가액보고서 :

부터

까지

대리점주소

- A. 연간 순판매액(제조업, 비제조업, 판매업) \$
총판매액에서 할인, 환급, 불량계약 및
선급 운임을 공제한 금액
- B.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수익을 더함
1. 현금 할인 환수액 \$
2. 수수료 또는 임대료 \$
3. \$
- C. 합 계(A+B) \$
- D. 차감경비:
1. 원재료비 \$

- 2. 가공비용 또는 서비스용 \$
- 3. 포장재료를 포함한 판매상품 \$
- 4. 계속되는 계약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외부용역(종업원 제외) \$
- 5. 총차감액 \$
- E. 총수익(C-D) \$
임금 부담보 특약이 붙은 경우에는 E에서 차감
- F. 총 임금 비용 \$
분담조항에 대한 기업휴지 기준(E-F) \$

회계연도 종료는 매년 _____ 입니다.
(날 짜)

이 보고서는 위에 명시된 기간에 대하여 보험증권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서 정확하고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회사명 :
성 명 :
직 위 :

만행위험담보 특별약관

1.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고 이 보험증권과 이 특약의 제 규정에 따라 이 보험증권은 만행 및 악행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부담한다.
2.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만행 및 악행이라는 말은 다만 고의의 또는 악의의 신체적 상해 또는 보험의 목적의 파괴만을 의미한다.
3. 당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유리(Glass Building Blocks은 제외함)에 대한 손해
 - (b) 도난 또는 절도에 의한 손해, 그러나 고의 또는 악의의 신체적 상해에 의한 손해 또는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파괴에 의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c) 감가, 지연, 악화, 온도나 습도의 변화, 시장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 또는 어떠한 것이든 결과적 또는 간접의 손해
 - (d) 실제의 적의 공격이나 임박하고 있는 적의 공격을 저항하는데 있어 육해공군이 취하는 행위를 포함한 군에 의한 적의 공격, 침략, 폭동, 모반, 혁명, 내란, 찬탈권으로 인하여 직접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4. 만행 및 악행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의 손해에 대하여 당 회사는
()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폭발위험제한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험료의 납입 후 이 보험의 목적물 또는 그 일부가 다음과 같은 폭발로 인하여 파괴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지진, 지하파, 폭동, 소요, 전쟁, 소요,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한 적대행위, 내란, 모반, 혁명, 반란, 군사력 또는 찬탈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제외) 이 증관에 기재된 제 조건과 배서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 (i) 가사용으로만 사용되는 보일러의 폭발
- (ii) 가스 제조소가 아닌 건물의 일부에 가사용 또는 조명이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의 폭발

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Fired Vessel(내부에 불을 가지고 있는 용기)의 화실(또는 연소실)내 또는 화염도관이나 연소가스의 송관 내에 충전된 가스 또는 미 소진연료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를 확장 부담한다.

그러나 당 회사는 다음의 물건이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차용물이거나 그의 관리하에서 운용되고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증기보일러, 증기관, 증기터어빈 또는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 b)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

다음 사항은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폭발이 아니다.

- a) 폭발로 인하지 않는 격동
- b) 전류
- c) 수충
- d) 배수관의 파열

공동보험 특별약관(I)

아래 조항을 이 보험증권에 삽입시키는데 합의함.

아래 서명회사는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증권 및 동 증권의 제 사본에 서처럼 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각 서명회사들은 각 회사에 할당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승인하며 이 보험증권을 발행한다.

보상한도액	회사명	대표
자		

보험료 및 보상금지급 특별약관

-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보험료 : 청약일
 -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특별약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증권에서 담보되고 있는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보험기간중 이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가액의 %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는 그러한 부족액의 상당분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에서 자기분담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책임한도액 특별약관

이 증권하에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매 사고당 ()에 대하여 US\$()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음을 합의함.
기타 다른 조건은 변동없음.

폭력, 침입 절도행위담보 특별약관

당초 보험료에 추가보험료의 지불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승인배서함
항목 제 호에 기재된 건물에 불법, 폭력침입하여 수용된 보험목적물이 절도
범에 의하여 절취 또는 손상되거나, 그러한 불법, 폭력침입이나 그 미수와 관련된
손해는 피보험자 부담이나, 본 증권의 전기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한 손해를 포함하
여 부담함.
다음사항을 전제로 함.

1. 피보험자는 본 증권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즉시
 - a) 경찰에 신고하고, 도난품 회수와 범인처벌에 따른 상당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 b) 당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청구서와 관계증빙서
류 및 합리적인 손해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고 발생후 30일 이내에 당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회사
는 부담하지 아니함.
2.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고용인의 선정감독에 관하여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문, 창문 및 모든 개구부를 튼튼히 하여야 함.
본 특약의 해당보험가입금액
본 특약은 허용된 계약을 위하여 증권 제 5조 제 1항 ()호를 불법, 폭력침입
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화재나 또는 화재후의 도난에 의한 손해로 수정함.
증권상의 부담조건에 의함.

지진, 우담수, 폭풍우, 홍수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이 특약의 규정에 따라) 다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확장 부담함.

- a) 지진(화재 및 진동)
- b) 홍수, 탱크설비 또는 배관의 분수나 범람(그러한 설비손해는 제외)
- c) 폭풍, 폭풍우
- d) 강우(건물 또는 그 건물의 수용물에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기초, 벽, 천정, 통로, 지붕, 문, 창문, 조광설비의 결함상태가 없어야 함.)
- e) 홍수, 즉 (i)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수원의 수로로부터의 범람이나 이탈
(ii)지상의 유수 또는 침수(f) 에 정한 것을 제외한 수원, 마개, 배관, 밸브 또는 그 유사품으로부터 분출된 물의 유수나 침수는 제외)
- f) 행정당국 또는 공공급수설비의 분수에 따른 도량이나 지하 배관에서의 범람.

이 증권의 모든 부담조건은(변경됨을 명시하지 않는 한)적용되며,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관하여도 이 특약에 의하여 확장 담도되는 위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간주함.

Gulf보험 특별약관

피보험자명

제 1 조 이 증권은 피보험자가 이재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이 증권의 조건에 따 특별히 부보한 재산을 포함하여 다음에 기재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피보험자의 재산은 신탁중이거나 매각은 되었으나 미인도중인 것, 양도 또는 저장중인 것, 시험 또는 점검중인 것, 수리 또는 변경중인 재산 및 임차계약 또는 특허권상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 및 책임을 지닌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제2조 이 증권은 다음의 보험목적물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수상용기 또는 그의 내용물
- B. 계산서, 청구서, 통화, 증서, 채무관계, 증빙서 임대, 어음 및 증권
- C. 자동차 또는 별도로 부보하지 아니한 철도 유조차륜
- D. 지하에 매몰된 파이프 그러나 노출되지 아니한 터널 속의 파이프 및 그의 내용물은 제외하지 아니함.
- E. 옥외 파이프도관, 그러나 철로밀과 도로밀에 매몰된 파이프를 위하여 매립한 콘크리트조 교차교각은 제외하지 아니함.

- F. 옥외 분기관 그러나 분기관 내의 파이프 및 판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 G. 옥외 보도용 포장과 자갈 및 석재
- H. 토지가
- I. 흙, 콘크리트 또는 벽돌로 만든 제방
- J. 항공기
- K. 지하의 최하층 도는 지하층이 없을 경우에는 지하 최하층 밑에 있는 벽돌, 석재 또는 콘크리트로 된 건물기초
- L. 제 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이권이 특별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이익이 될 수 있다.
- M. 건설공사보험증권 또는 공장설비보험에 별도로 보험가입한 보험의 목적물

제 3 조 손해보상조항

손해 또는 그 지시인에게 정산지급한다.

제 4 조 이 증권에 인쇄된 조항중 제 2, 4, 7 그리고 17조는 무료로 한다.

제 5 조 이 증권에 인쇄되어 있는 제 5조 (b)항 및 제 5조 (C-1)항은 무효로 함. 따라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로 인하거나 또는 이 증권의 부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함.

제 6 조 이 증권에 인쇄되어 있는 제 6조의 내용은 다음의 조항으로 대체함. 이 보험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다음의 사고에 의하여 생긴 손해 또는 그 결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a) 지진, 분화 또는 기타 자연의 변상 그러나 상기 위험이 화재 및 폭발을 속발 시키고 이 속발된 화재 및 폭발위험을 증권에서 담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b)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나 전쟁유사 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 민간전쟁
- c) 폭동, 군사 또는 민간봉기, 소요,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포위상태의 선전 또는 그 유지를 결정하는 사태,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전기한 사고들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상사태(실제적인 여부를 불문)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가 전기한 이상사태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발생하였음을 피보험자가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 회사가 소송절차에 있어서 이 규정을 들어 어떤 손실이나 손해를 이 보험 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 손실 또는 손해가 보상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제 7 조 허락사항

이 조항은 특별히 다음사항을 허용함.

- (1) 항시 작업을 함.
- (2) 소재지 변경 및 필요에 따라서 위험을 증가시킴.
- (3) 기업이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모든 물품 및 자재를 사용함.
- (4) 시기의 제한없이 기업을 공백상태에 두거나 작업을 폐쇄 또는 중단시킴.
- (5) 목적물을 변경, 첨가 또는 수리할 수 있으며 부속건물, 새로운 건물, 구조물 및 탱크를 건립할 수 있음. 보험의 목적물을 변경, 추가 또는 수리하거나 증권에 기재한 구내에 새로이 탱크나 부속건물을 건립한 때에는 이 증권(이 증권이 건물, 탱크 및 부속건물에 적용되는 경우)의 조건 및 증권에 첨부된 조약에 따라 보상한다. 이 증권은 변경 또는 추가된 목적물과 새로이 건립된 건물, 탱크 또는 부속건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며(증권이 수용물에 적용되는 경우)추가된 목적물, 신조건물 및 부속건물내의 수용물에 대하여도 확장하여 이를 부담함. 이 조항은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자동살수장치 약관의 내용을 포기 또는 수정하지 아니한다.
- (6) 보험의 목적물이 매도되거나 법적 절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 및 이권이 변경되 채무계약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다. 이 보험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위험이 부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특정 고지사항과 합의사항을 이 증권에 첨부 또는 추가된 특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8 조 이 증권의 제 11항에 표기된 15일은 16일로 변경하며 제 13항에 표기된 3개월을 12 개월로 변경한다.

제 9 조 잔존물 제거조항

이 보험은 이 증권에서 부담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잔존물에 대한 제거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당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보험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에서 본 조항과 같은 조항이 있던 없던 불문하고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이 가지는 비율 이상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잔존물의 제거비용은 이 증권의 공동보험조항의 실손해액 산출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기타 보험조항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 이 증권에 보험에 가입된 동일한 목적물이 피보험자의 명의 또는 피보험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타인의 명의로 해상보험증권 또는 다

른 보험증권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상보험증권 또는 다른 특정 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상지급될 금액까지는 이 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증권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과 해상보험 또는 다른 보험증권상의 모든 분담금 공동계약 해손 또는 분배조항을 적용한 후 지급될 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며 이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 11조 시간조항

이 증권의 시간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의 소재지역의 표준시간으로 한다.

제 12조 포말손실 및 손해부담 조항

이 증권에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소화작업중에 상실, 소진 또는 파괴된 포말용제 또는 소화기재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산정에 포함한다.

제 13 조 손실조항

피보험자는 매년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고 동 사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것을 보험자가 양해하였으므로 자산재평가로 인한 손실은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이 증권은 30일의 사전 서면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피보험자인 ()에 발송함으로써 계약을 취하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분리조항

이 증권의 약관 및 특약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그 위반사항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당회사는 즉각 이 증권이 완전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이러한 위반사항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증권전부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위반이 일어난 특정건물 부속건물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제 16조 피고용인의 재산

본 증권의 조항 및 약관에 따라 이 보험은 자동차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임원 및 종업원의 도구, 의류 및 개인재산에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구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 또는 종업원 일인당 미화 500\$을 한도로 이를 보상한다. 그러나 주거지역 구내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이동조항

이 증권은 보험의 목적물을 부담위험에 의하여 위태로운 지역으로부터 이동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 손실 또는 손해도 담보하며 보험의 목적물을 부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한 장소에서의 10일간을 부담한다.

제 18 조 통제불능 조항

이 증권은 피보험자가 그의 통제가 불가능한 구내에서 증권에 배서된 담보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 조 피보험자 유리조항

이 보험의 유효기간중 이 증권에 첨부된 배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규정의 일부가 법령 또는 기타에 의하여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확장 부담되도록 개정되는 경우 여하한 확장부담조건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한다.

제 20 조 대위조항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이전에 이미 상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써 동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였다더라도 본 증권의 모회사, 종속회사 또는 방계회사에 대한 대위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보수조항

피보험자는 손실 또는 손실발생의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당회사에 지체없이 손해발생통보만 하고 자의로 즉시 필요한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사실 및 보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보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 증권의 본문 제 12조 및 제 14조 대신에 당회사는 경우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평가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파괴되었거나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을 적당한 기간이내에 동종 동질의 재료로 수리 재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제 23 조 전기기기 조항

당 회사는 화재가 속발하지 않는 한 인공적인 전류로 인하여 전기기기 장치 또는 전선에 생긴 전기적 훼손 또는 장애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속발된 화재에 의하여 생긴 손해부분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 24 조 공동보험 조항

이 증권이 요율 및 내용을 고려하여 피보험자는 이재가 발생시에는 보험목적물의 항목별로 시가의 최소한 90% 보상혜택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부족액만큼의 손해액에 대한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 손해보상금 계산액이 이 증권상 총보험가입금액의 5% 미만인 때에는 손해를 입지 않은 재산의 재고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증권이 어떠한 조건도 이 공동보험조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5조부터 제 28조까지는 보험목적물의 제 2항목에 한하여만 적용한다.

제 25 조 잠정금액 조항

이 금액에 기재된 금액은 잠정적이며 실제 보험가입금액은 이 증권에 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의 가액의 항상 10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및 다음 조항에 규정하는 보험료 조정조항을 전제로 한다.

제 26 조 보험료 조정조항

- (a) 이 증권상 보험목적물의 제 2항목은 예치보험료를 징수하고 발행되었으므로 피보험자는 이 증권의 매분기 ()가 경과된 후 적당한 시기 이내에 전기분의 최종일까지의 보험목적물의 총가액(제 27조의 손해사정기준조항에 의거하여 산출된)을 기재한 정산서와 동일목적물 또는 그 일부가 보험에 가입된 다른 보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b) 매년 계약갱신일자에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보험가입금액을 공제하고 매년 보험계약기간중 보고된 분기별 가액의 평균금액을 책정하며 연간 평균가액에 대한 보험료가 3년간 총보험료의 1/3을 초과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 초과분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간 평균가액에 대한 보험료가 3년간 총보험료의 1/3미만인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초과지불 해당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c) 이 보험계약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회사는 취소일까지의 모든 분기별 가액의 평균금액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취득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계약취소는 이 증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27조 손해액 사정기준 조항

() 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이재보상청구의 경우 손해액 사정기준은 이재가 발생한 날짜의 시장가격과 수집비 파이프 시설비, 운송비용, 피보험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합산하며 또한 유조차량 유조트럭 보-트편으로 정유공장까지 운반된 원유 및 하역비, 운임수입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종 동질의 물품으로 대체되는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재고품에 발행한 손해보상청구의 경우의 손해액 산출기준은 이재발생 장소 및 시점의 시장가액으로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동종 동질의 물품으로 대체되는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8 조 보상한도 조항

당 회사는 1사고 1량의 유조탱크의 내용물에 대하여 일금 원정을 초과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기 「회사」란 용어는 「회사들」의 의미로 해석한다.

유공 특별약관

다음의 조건은 배서#1에 추가하여 유효함.

- (1) 확장위험 담보(폭동 및 동맹파업을 포함한 광범위 조건)
- (2) 파괴행위 및 악의적인 행위
- (3) 이 증권에 서명한 원수보험회사중 어느 한 회사라도 파산하여 인수 책임액을 보상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지불능력이 없을 때에는 잔여회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회사의 책임액에 대한 각 사의 인수비율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안분 부담한다.
- (4) 이 증권상의 일체의 지급보험금은 대한석유공사와 걸프석유회사간에 1963년 9월 21일자로 체결한 차관계약서에 따라 걸프석유공사 또는 그 종속회사간에 지급될 부채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5) a) 이 증권상에서의 지급보험금이 미화 50,000불 또는 그 미만일 때에는 직접 대한석유공사에 지급하며 미화 50,000불을 초과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손해를 입은 재산의 보수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액을 우선적으로 대한석유공사에 송금하고 잔여금액이 있을 때에는 1963년 9월 23일자로 대한석유공사와 걸프석유회사간에 체결한 차관계약서에 따라 걸프석유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다.
b) 이 화재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 명세서상의 부분품이란 용어는 모든 일반자

재와 장비를 확대하여 포함함을 의미한다.

- (6) a) 피보험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추가로 부보하고자 하는 보험목적물의 총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일자,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및 기타 필요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당회사는 잔여보험기간 중에도 원증권에 표시된 구역내의 피보험자가 고지한 추가신축건물, 구조물 또는 탱크에 대하여 원보험증권의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담보한다.
 - b) 원보험증권에 새로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추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보험증권에 적용한 보험요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 (7) 이 보험증권에 첨부한 확장위험담보 조약, 조항 중 제 7조는 무효로 하고 그 대신 다음의 조항으로 대체한다.

폭발에의 적용조항

폭발에 의한 손해는 내부에 불을 가지고 있는 용기의 화실(또는 연소실)내 또는 미소진연료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를 포함한다. 당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그의 관리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증기보일러, 증기관, 증기터빈, 증기기관 및 기계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회사는 운전 중에 있는 기계, 기기 또는 장치의 내부 증기압력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전류, 수충 및 배수관의 파열은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폭발이 아니다. 이 증권상의 기타 폭발에 관한 조항은 이 특약으로 대체된다.

- (8) 피보험자가 산출한 모든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기초공제 특별약관

이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 회사는 매사고당 손해액의 _____ 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1. 본 증권의 보험료는 다음의 2분기로 납입하기로 특별히 합의한다.

- a) 제 1분기는 증권발행일에 _____ 납입함.
- b) 제 2분기는 _____ 일에 _____ 납입함.

그러나 다음의 조항에 합의한다. ;

분납보험료를 상기 납부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당회사는 그 납부일자로 부터 지불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2. 발생한 손해금액이 본 증권에서 납입된 분납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분납 보험료를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이외는 본 증권의 제 조건을 변경시키지 아니함.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재산에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확장담보합니다.

잠정보험요율적용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는 관계당국의 인가에 의해 추후 확정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이상 열거된 조건 이외의 여하한 규정도 이 보험증권상의 합의사항, 부담조건, 계약 전 알릴 사항, 면책조항을 변경하거나, 방기하거나 또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 특별약관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입은 상품은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판매될 수 없고, 상표를 부착한 채로 처분될 수도 없으며, 또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상표가 찍힌 용기에 담아서 처분될 수도 없다.

가격절하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상품의 원 상표의 제거, 재부착 또는 수선하는데 발생하는 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폭음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폭음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해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및 손상을 확장 부담한다.

폭음에 의한 손실이라 함은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결과에 의해 발생한 손상을 말한다.

지진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에 포함된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분화, 지진 또는 지진에 의한 해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에 의하여 이 증권사에 명시된 보험목적에 손해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를 보상한다.

선박접촉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은 본 특약에 첨부된 증권상의 조항과 규정에 따라 이 증권에서 부담된 재산이나 이 재산을 수용하는 건물이 선박과의 실질적인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된 직접적인 손해 및 손상을 확장하여 부담합니다.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상책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

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시작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리스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를 할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3. 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일체(화재보험의 목적외의 물건을 제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4. 보험계약의 추가청약

(1)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2에서 정한 회사의 보험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마다 지체없이 보험계약을 청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회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청약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 2) 보험의 목적의 품목 및 수량
- 3) 보험가입금액
- 4) 리스계약번호
- 5) 리스기간
- 6) 임차인의 성명
- 7) 보험의 목적의 설치장소

(2) 앞의 (1)의 보험청약에 지체 또는 탈루가 있었더라도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2)에 정한 보험의 목적이 인도된 날로부터 7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보험의 청약에 탈루가 있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위험종료 후라도 이의 없이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위 (1), (2)의 규정에 따라 매 월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8에 정한 예납보험료는 예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정산합니다.

5.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액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리스계약기간

보험가입금액

(1) 리스계약 초년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연도중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할로 계산할 금액을 당해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3) 6-(1) 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6. 가치하락 부담보

(1)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

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선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토목건설 등의 기재등록

(1)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서 등록 또는 차량번호의 지정 또는 표식(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전번호표를 제외)을 부착할 때나 이미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 또는 효력상실 됩니다.

(2) 위 (1)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익상실담보 특별약관

1. 이 증권에 기재된 제 규정에 따라서, 이하의 면책 또는 제한한 것은 제외하고,

이 보험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건물, 기타 재산 및 그 일부가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에 가입된 위험에 의하여 손실 또는 파손됨에 따른 기업휴지의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상실을 부담합니다.

2. 보통보험약관중 아래조항은 삭제됩니다.

제 7조 - (a)항 에서 (g)항

제 9조, 제 14조 및 제 17조

3. 보통보험 약관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대체됩니다. 본 증권에서 담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단이나 저해상태를 감소, 정지시키고 또한 손실을 방지 및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거나 허용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인정한 기간내에 자기부담으로 보험금 청구명세서를 구비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나 간접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을 때는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대한 확인조사시에 필요로 하는 회계장부, 기타 사업관계장부, 영수증, 송장, 대차대조표, 증명서, 통지서, 설명서등의 증거물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금청구 및 그 관련사항의 진실성에 관한 서약서 또는 기타 법률상 유효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보험에서의 보험금은 본 조항의 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반환됩니다.

4. 보통보험약관 제19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본 증권 하에서 아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a) 보상기간 종료 후 1년 또는

(b) 보험금 청구사유가 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지불했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을 인정한 날 이후 3개월

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소송중이거나 중재중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기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지불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6. 본 특약조항과 명세서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되며, 보통보험약관, 특약조항 또는 명세서 중의 특정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규정된

의의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7. 전기장치 조항 : 회사는 발전기, 여자기, 변압기, 전기조절기, 축전기, 전류차단기, 배전기, 기타 전기기구 및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 및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된 손실 및 손해를 입은 전기기구 및 전기장치 이외의 물건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간접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익상실담보 보험계약명세서

항목(1) 총이익

보험가입금액

제 1항의 보험계약은 (a)매상고의 감소와 (b)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에 한하고, 보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매상고 감소의 경우** : 손해발생의 결과로 표준매상고에 미달한 경우에 그 미달금액에 손해보상기간의 총이익율을 곱한 금액

(b) **영업비용의 증가인 경우** : 추가경비가 있었다라면 손해의 결과로 보상기간 중에 발생하였을 매상고의 감소를 방지,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연적 및 합리적으로 지급한 추가경비(주의사항2) 그러나 경감된 매상고 감소액에 연간 총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상기 금액에서 부보경상비중 보상기간중에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지불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이 항목의 보험가입금액이 연간 매상고에 총이익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금은 그 비례로 감소됩니다.

항목(2) 주간임금

합계

용어정의

총이익 : 순이익에 보험가입경상비용을 가산한 금액 만약 순이익이 없으면

보험가입경상비에서 총경상비에 대한 보험가입경상비의 비율을 순영업손실액에 곱한 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이익 : 시설구내에서 피보험자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상비 기타 제 비용을 충분히 계상한 후 순영업이익(자본수익 및 자본지출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부보경상비용 ;

매상고 :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사업경영과정에서 판매된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피보험자에게 지불되었거나, 혹은 지불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상기간 : 손해발생시로부터 그 후 () 개월간을 의미합니다. 단, 손해발생의 결과로 사업성과가 영향을 받는 기간에 한합니다.

총이익률 : 손해발생 직전이 회계연도의 매상고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매상고 : 손해발생 직전의 12개월간의 매상고를 의미합니다.

표준매상고 : 손해발생 직전의 12개월중 보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의 매상고를 의미합니다. 매상고는 기업의 추세나 변동상황 또는 손해발생 전후의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상황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되며, 그 조정된 금액은 손해발생 후 당해 기간 동안에 손해가 없었더라면 달성할 수 있었을 매상고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1 : 보상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시설구내 이외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한 타인이 사업상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그에 대한 지불금액 또는 지불할 금액은 매상고 계산시 고려됩니다.

주의사항2 : 이 증권에 사업비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상비가 있으면 영업비의 증가로서 보상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추가비용 중에서 순이익과 보험가입 경상비의 합계액이 순이익과 총경상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계상합니다.

10% 자동증가액 특별약관

이 약관은 각 품목의 기존 보상한도를 초과한 보험가입금액의 10%까지의 증가액을 확장담보한다. 피보험자는 이 증액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시일로부터 추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증액분을 통보한 후에야 이 규정이 완전히 유효하다.

잠정이동 특별약관

거래되는 저장품, 원료 그리고 건물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부보재산을 세탁, 수선

및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점유하지 않은 다른 구내로 일시 이동중이거나 국내의 모든 수로, 철로, 또는 도로로 운송 중에 발생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부담한다.

건축가, 조사자 상담료 및 법적비용 특별약관

이 약관에서는 보험목적물의 파손이나 손해의 결과로 수리, 교체 또는 재축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위의 비용을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사이버 면책 조항

이 약관은 아래에 원인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기인 또는 초래된 손해는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인터넷이나 유사한 것의 사용 또는 오용
- b) 데이터나 기타 정보의 전자적인 전달
- c)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사한 문제
- d)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및 기타 유사한 것의 사용 또는 오용
- e) 웹사이트 및 기타 유사한 것에 올려진 데이터나 정보
- f) 컴퓨터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손해 또는 피해. (단, 지진, 화재, 홍수 또는 폭풍에 기인한 피해는 제외)
- g) 인터넷 및 기타 유사한 것 및 인터넷주소, 웹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작동 또는 오작동. (단, 지진, 화재, 홍수 또는 폭풍에 기인한 피해는 제외)
- h) 고의나 혹은 고의가 아닌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위반

서기2000년 부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조건·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clusion of Sabotage & Terrorism

증권이나 다른 조건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여하한 전쟁위험 혹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이 약관은 손해가 우연적이건 고의적이건,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근인(近因)이건 원인(遠因)이건, 전체적이건 부분적이건 다음의 위험에 의해서 초래, 기인, 확대된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시여부나 선전포고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a), (b), (c)에 의한 전쟁, 적대적이거나 전쟁과 유사한 행위, 전투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실제적이거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

(a) 정부나 주권(de jure or de facto) 혹은 육/해/공군을 보유, 사용하는 어떠한 단체

(b) 육, 해, 공군

(c) 그러한 정부나 권력, 단체, 무력의 대리인

(2) 전시나 사고여부를 막론하고 핵분열 혹은 방사능 관련 전쟁무기

(3) 폭동, 반란, 혁명, 내전, 불법행위에 의하거나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하는 전투

(4) 인지여부 및 행위자를 막론하고 테러행위의 목적을 위한 1인 혹은 다수의 행위

(5) 1인 혹은 다수에 의한 의도된 운행권한의 강탈을 포함하여 항공기, 배, 트럭, 기차 혹은 자동차 등에 대한 공중납치 및 기타 불법적인 강탈행위 혹은 교통수단의 잘못된 수행 또는 관리

이러한 손해 또는 피해는 관련된 원인, 이벤트, 개입 혹은 순서에 관계 없이 보상에서 제외된다.

테러행위 목적이란 협박, 강요, 응징 혹은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사람 혹은 물건에 대한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을 포함하는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의미한다.

이 증권의 모든 다른 조건 및 제외조항은 변경되지 않는다.

구외시설 부담보 조항

보험대상 구내의 300m 이상을 벗어난 모든 동력선, 통신선, 송수관 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담보되지 않는다.

정보기술조항

이 조항에서 재물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한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조항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및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된다.
-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및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

비비례보상 특별약관

각 항목들의 보험가입금액은 회사가 평가한 실제 비용과 같다고 가정 하에서, 모든 보상하는 손해는 공제금액을 고려한 보상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된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가 피보험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면 비례보상조항이 적용된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1. (Scope of Liability)

회사는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된 물건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Risks Covered)

- (a) 보상한도액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b)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i)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ii)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iii) 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iv)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을 위해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3. (Exclusions)

이 특별약관에 아래의 면책을 추가합니다.

- (a)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 (b) 전쟁, 폭동 및 그밖에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c) 지진 혹은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d)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e)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f) 원자력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g)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h)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i)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j)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가스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Occurrence of Accident)

- (a)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을 때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자의 주소, 성명, 사고의 상황 및 이들의 사항의 증인이 될자가 있을 때는 그 주소, 성명을 또,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는 일
 - ii)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의 보전 또는 행

사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손해의 방지 또한 경감을 위한 필요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iii)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수단 또는 호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iv)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할 일

(b)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회사는 iv)의 경우에는 방지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 iii)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Limits of insurance claim etc.)

(a)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보상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c)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6. (Settlement by the Company)

(a)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신하여 자기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b)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요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는 그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Transfer Of Rights Of Recovery Against Others To Us)

이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소송」을 제기하든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 (Succession of Right and obligations of the Insured)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가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약정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9. (General Clauses of Standard Fire Insurance)

이 특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특약규정에 반하지 않으면 화재보험 보통보험약관의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나의 사고 (72시간) 특별약관

회사는 지진, 분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보장하는 위험이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동일한 지진학적 또는 기상학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고는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시기는 보험기간중에 있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조항

본 보험 또는 본 보험에서 발생한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는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 (pandemic),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의 실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 (cost) 또는 경비 (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 (pandemic),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 (expense)는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염병 면책 조항

1. 본 보험 약관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병 혹은 그 공포 혹은 위협(실제발생 혹은 인지상황이든)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기여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 (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

(cost) 또는 경비 (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전염성 질병은 어떠한 물질 혹은 매개체의 도움으로 어떠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옮겨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한다.

2.1. 물질 혹은 매개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혹은 다른 유기체 혹은 다양한 변종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2.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염의 방법은 공기 중 전염, 체액 전염, 물질, 고체, 액체 혹은 가스 혹은 유기체의 표면을 통한 전염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2.3. 질병, 물질 및 매개체는, 인간의 건강 및 복지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어야 하고, 재물의 파손, 가치하락, 가치손실, 시장성 및 사용손실 등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어야 한다.